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10

2023 October + Vol. 569

## 교정 NEWS



### 교정 플레이스

#### 교정 이모저모

소통과 화합, 희망을 노래하다  
제13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

#### 역사와 오늘

감시탑 대신 세운 교정교화의 금자탑  
포항교도소

#### 교정의 공간

긍정의 힘으로 교도소를 건강하게  
포항교도소 의료과

#### 외부 칼럼

돌멩이 같은 일상에서  
보석 같은 인생으로

### 교정 아카이브

#### 교정 포커스

금융명  
부산형무소와 근대 형형(상)

#### 교정 논문

윤지인  
성범죄 재범자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교정 리포트

이용주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

#### 전문가 칼럼

이용식  
괴물을 다루기 위하여

#### 교정 판례

이세린  
형사 전자소송에 따른  
교정기관의 쟁점과 과제

#### 교정 백과

최준혁  
코로나19에 대한 독일법계  
국가의 교정기관의 대응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10

2023 October + Vol. 569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월  
2023년 10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기획·디자인  
반디컴 Tel. 02-2272-1190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http://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ontents

## 교정 플레이스 Corrections PLACE

### 교정 이모저모 04

소통과 화합, 희망을 노래하다  
제13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

### 역사와 오늘 08

감시탑 대신 세운 교정교회의 금자탑  
포항교도소

### 교정의 공간 14

긍정의 힘으로 교도소를 건강하게  
포항교도소 의료과

### 외부 칼럼 18

돌멩이 같은 일상에서 보석 같은 인생으로



## 교정 아카이브 Corrections ARCHIVE

### 교정 포커스 20

부산형무소와 근대 행형(상)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 교정 논문 32

성범죄 재범자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윤지인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 교정 리포트 62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  
이용주 화신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강사

### 전문가 칼럼 90

괴물을 다루기 위하여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교정 판례 92

형사 전자소송에 따른 교정기관의 쟁점과 과제  
이세린 안양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감

### 교정 백과 112

코로나19에 대한 독일법계 국가의 교정기관의 대응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https://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s://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https://www.youtube.com/@KCS_T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https://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134

교정선배와의 만남

긍정적 도전으로 추수한 풍요로운 인생 2막  
전 영월교도소장 김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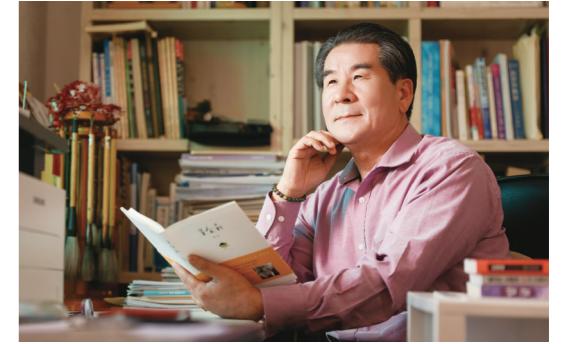
136

교정 NEWS

모범 공무원

145

독자마당



# 소통과 화합, 희망을 노래하다 제13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

초가을의 선선한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원주 행구수변공원에 음악이 울려 퍼졌다. 프로 연주자나 가수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 진심 어린 노력을 꾹꾹 눌러 담아 나들이객의 발길을 서서히 모으는, 그런 노래와 연주. 교정가족들과 관객들 앞에서 즐거움과 희망을 전한 제13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는 이렇게 막을 올렸다.

글 강진우 사진 신성욱



## 다시 시작된 교정공무원의 음악 축제

노을이 아름답게 진 지난 9월 23일, 제13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가 원주 행구수변공원 내 수변무대에서 개최됐다. 2019년 제12회 음악회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4년여간 휴식기를 가져서인지,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리허설에 돌입한 공연팀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설레는 웃음이 깃들어 있었다.

전국 교정기관 교도관 음악동호인 연합회는 올해부터 음악회의 정식 명칭을 ‘전국 교정인 음악회’에서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로 변경했다. 교정인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교도관으로 명료하게 바꿈으로써 시민들에게 교정 공무원의 존재와 중요성, 정복 안에 숨겨진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싶었다는 게 김전수 연합회장의 이야기다.

음악회 시작 시간인 오후 4시가 되자 원주교도소 어울림 음악동호회 관악기팀이 무대에 올랐다. 플루트와 소프라노 색소폰의 감미로운 음색에 나들이를 즐기고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수변무대 근처로 자리를 옮겼다. 유태오 전 대전지방교정청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드러머 김진현, 강릉교도소 솔향의 보컬과 기타, 안동교도소 고타야의 민요메들리와 포크송, 수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앙상블의 품격 높은 협연이 1부 공연을 풍성하게 채웠다.



### 가을 하늘을 타고 퍼진 격려의 박수

1부 공연이 끝난 직후 2부 순서인 개회식이 이어졌다. 더 많은 관객에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1부와 3부 공연 사이에 개회식을 진행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전수 연합회장은 “이 자리는 수용자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소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전국 교정기관 음악동호회가 만국의 공통어인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 함께 끝까지 공연을 즐겨줄 것을 당부했다.

격려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유태오 전 대전지방교정청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전국 교도관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격려를 가득 담은 박수 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을 타고 방방곡곡으로 퍼졌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원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보광 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음악회 준비를 위해 애쓴 공연팀에게 고마움을 전했으며, 아울러 의미 있는 음악회를 재개한 연합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 음악으로 하나 된 교정과 관객

1부 공연이 오케스트라, 민요, 가곡, 드럼 솔로 등을 선보인 ‘음악종합선물세트’였다면, 2부 공연은 밴드 중

심의 ‘록 페스티벌’이었다. 안양·동부·여주·대구 연합팀인 안동여대,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의 사랑찾기, 여주교도소의 희망울림, 원주교도소의 어울림, 제주교도소의 모드락 등 6개 동호회의 밴드가 신나는 록 음악을 선사했으며, 관객들의 환호성이 연신 쏟아졌다. 중간중간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을 활용해 호응이 좋은 관객들에게 무선청소기, 안마기, 약과, 호두과자 등을 선물하자 분위기가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1~3회 음악회를 주관하며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의 기틀을 잡는 데 일조한 춘천교도소의 사랑찾기는 회장의 입원으로 공연 준비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두 곡

을 훌륭하게 소화했으며,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제주교도소 음악동호회 모드락은 80년대 전통 록부터 랩 공연까지, 마지막 공연팀이라는 위상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해 세대를 아우르는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어느새 12개 팀의 공연이 모두 끝났다. 저녁 8시가 넘었음에도 많은 관객이 끝까지 함께했다. 마침내 자리 를 털고 일어나는 이들의 얼굴에는 공연을 준비하던 교정공무원과 같은 모양의 힘박웃음이 자리 잡았다. 교정과 관객이 음악으로 하나 됐음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 Mini Interview



#### “음악회의 새 출발을 알리게 되어 행복합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려 무척 기쁩니다. 원주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 애써 주신 원주교도소 어울림 음악동호회와 음악회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신용해 교정본부장님,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음악 축제에 동참해 주신 관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음악회는 매년 더욱 풍성해질 테니,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국 교정기관 교도관 음악동호인 연합회 김전수 회장



#### “함께해 주신 원주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시민들이 원주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음악과 함께 마음껏 힐링을 느끼실 수 있도록 기획했는데요. 다행히 교정 가족들과 많은 시민이 음악회를 즐기면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음악회였기에 부담감이 상당했지만, 나름대로 첫발을 잘 뗀 것 같아 뿐듯합니다. 내년 음악회에서는 어울림 음악동호회의 일원으로서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3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 추진위원회 장병수 위원장

# 감시탑 대신 세운 교정교화의 금자탑

## 포항교도소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포항교도소는 교도소의 상징이었던 감시탑을 세우지 않은 최초의 교도소로, 교정의 방향성이 엄정한 법 집행에서 출소 후 삶을 염두에 둔 교화로까지 확장됐음을 실감케 하는 상징적인 교정기관이다. 포항교도소 교정공무원은 그 위에 교정교화라는 금자탑을 한 층씩 착실히 쌓아 나가고 있다.



# 1

## 지역에 조화롭게 녹아들다

KTX가 정차하는 포항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포항교도소는 어느 교도소와 사뭇 다른 느낌을 선보인다. 청사 앞 공간은 일반 공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모습을 자아내고, 좌우로 길게 뻗은 청사는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현판만 없다면 교도소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포항교도소에는 교도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조물이 쉬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청사가 그 자체로 교도소 전방의 주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앞면에 따로 벽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됐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교도소의 상징물 역할을 수행했던 감시탑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안 시스템의 첨단화에 따라 굳이 감시탑을 세우지 않고도 수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감시탑을 교도소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포항교도소는 '국내 최초의 감시탑 없는 교도소'라는 수식어와 함께 2006년 11월 개청했다.

때로는 상징이 방향성을 대변한다. 감시탑이 사라졌다는 것은 교정이 엄정한 법 집행 그 이상의 비전을 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교화가 바로 그것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직업훈련과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직업 훈련 및 자기 계발 여건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재범률을 낮추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감시탑이 없는 포항교도소는 이러한 교정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읽을 수 있는 교정기관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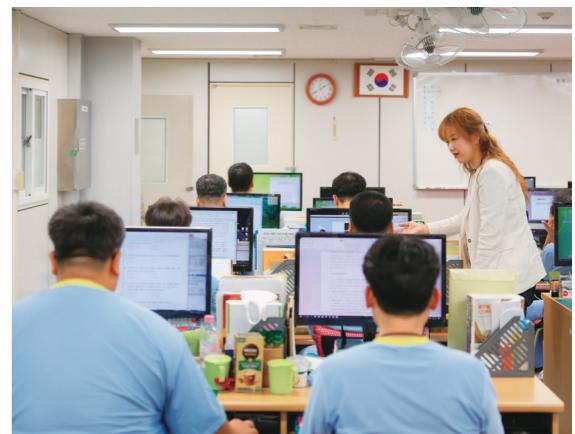
## # 2

## 다채롭게 펼치는 교정교화 노력

포항교도소는 진일보한 교정에 걸맞게 교정교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포항교도소는 성폭력사범 및 장애 수용자 전담 교도소인데, 이에 따라 포항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심도 있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자율체 우 수용동도 전국 교정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총 수용자의 1/5가량이 자율체우 수용동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수용 계호에 대한 부담감을 줄 이면서도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가 하면 포항교도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 분교를 품고 있는 전국 4개 교정기관 중 하나다. 매년 연말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에 임하면서 학업 의욕이 높은 수용자들의 지원을 받아 방통대 신입생을 선발하며, 2월 말 방통대 분교가 있는 교도소로 이감된 뒤 3월부터 학기에 돌입한다. 방통대 입학 수용자들은 출역 시간 동안 각자 수강신청한 강의를 들으며 출소 후 삶을 한결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간다. 지난 2019년에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포항교도소 수용자가 전국 수석을 차지하며 학과 최우수상을 수상, 마음을 고쳐먹으면 수용자도 선의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다.



##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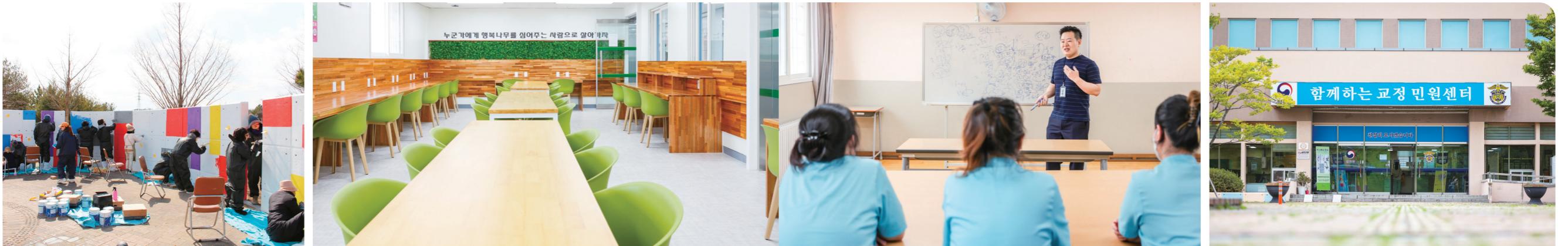
## 즐거운 일터, 함께하는 교정기관

올해 2월, 교정기관으로서는 다소 이색적인 업무협약이 포항교도소에서 체결됐다. 교정공무원, 민원인, 지역주민이 민원실 내 해오름 갤러리에서의 정기 전시회를 통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 예술 사회적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 사회적 기업은 갤러리 전시와 더불어 포항교도소의 외형적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일조했는데, 개청 기념비 주변에 세워진 콘크리트 벽을 몬 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으로 재단장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추상적 구성 요소와 색깔이 일정하게 배치돼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가 상호 동등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유토피아

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 참여 작가들의 설명이다. 교정교화의 목적과도 맥이 닿아 있는 이 작품 덕분에 포항교도소 청사 앞 풍경이 더욱 산뜻해졌다.

포항교도소 교정공무원의 일상에도 즐거움과 편리함이 더해지고 있다. 올해 초 비상대기 숙소에 '새물내 빨래터'라는 세탁실을 만들어 거주 교정공무원의 빨래 고민을 덜었다. 올해 3월 말에는 비상대기숙소 공터에 나무를 심고, 4월에는 포항교도소와 비상대기숙소를 잇는 벚꽃길을 활용해 작은 벚꽃축제를 개최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모든 구성원과 나눴다. 포항교도소는 앞으로도 교정공무원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정기관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긍정의 힘으로 교도소를 건강하게

## 포항교도소 의료과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크나큰 사명감이 필요하며 그만큼 고단하다.

수많은 수용자를 일당백으로 돌봐야 하는 의료과 직원들의 어깨는 더더욱 무겁다. 이런 상황에서 긍정의 힘은 포항교도소 의료과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이들은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도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두를 돌보다

포항교도소는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 개청해 제반 시설이 쾌적하고 수용동 규모가 크다. 포항심리치료 센터가 갖춰져 있으며, 장애 수용자 전담 교도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포항교도소에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수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렇기에 우재택 의료과장과 2명의 공중보건의, 방사선사와

간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포항교도소 의료과는 매 순간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용자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15명의 직원이 1천 명 넘는 수용자를 살펴야 하고 때때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소 직원들도 돌봐야 합니다. 당연히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서로 돋지 않으면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의료과는 직원 간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 일에 대한 책임감도 대단하죠. 이렇듯 남다르게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일을 처리했을 때 느끼는 보람과 자부심 또한 남다릅니다.”

누군가를 돌보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며, 건강한 심신을 가꾸고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수다. 이를 고양시키기 위해 의료과 직원들은 업무 외 시간을 다양한 취미 생활로 가득 채운다. 헬스는 기본, 탁구, 등산, 수영, 낚시, 캠



핑, 택견, 스킨스쿠버 등을 두루 즐기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샘솟는다는 게 의료과 직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 꼼꼼한 환자 찾기로 끌어올리는 건강도

타 소에 비해 수용자 중 환자의 비중이 높다 보니, 포항교도소 의료과 직원들은 이입 수용자 건강검진에 특별히 신경 쓴다. 몸에 이상이 있는 수용자를 신속·정확하게 추려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얼마 전에는 그 꼼꼼함이 빛을 발했다. 지난 5월 포항교도소로 온 한 수용자의 건강검진을 진행하던 중 이상 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외부 병원으로 후송, 정밀검진을 진행한 결과 암 말기로 진단된 것. 덕분에 말기 암 환자가 수용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의료과로 진료를 받으려 오지는 않았지만 수용동 어디에선가 홀로 끙끙 앓고 있을지도 모를 환자를 위해 이른바 ‘숨은 환자 찾기’ 활동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한두 달에 한 번씩 보안과와 협의해 일정 기간 동안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 수용자를 추리고 그간의

의료 이력을 파악해 건강 이상이 의심되는 수용자를 불러 진료하는 것. 한 번 진행할 때마다 30여 명의 수용자가 추려지며, 이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홍오윤 의료계장의 설명이다.

“몸의 이상을 발견하고 진료를 받으려 오는 수용자는 빠르게 조치할 수 있지만, 아픈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진료를 받으려 오지 않는 수용자를 내버려 두면 병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포항교도소와 수용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숨은 환자 찾기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활동이며, 앞으로도 보안과와 함께 주기적으로 활동을 진행해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건강도를 꾸준히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긴급 상황에서도 빈틈없이 재빠르게

포항교도소 의료과 직원들은 긴급 상황 대처 능력도 출중하다. 2018년, 2021년, 2022년 등 총 3번에 걸쳐 정확한 응급조치로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이들 중 선정하는 하트세이버에 선정됐다. 하트세이버 3회 이상 수상 이력이 있는 교정기관은 포항교도소가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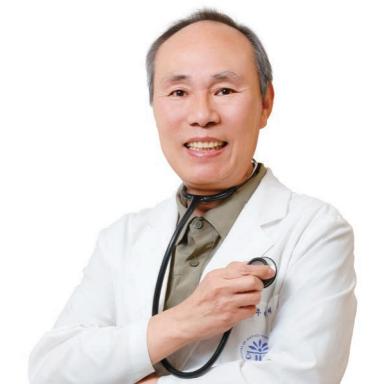
얼마 전에는 직원 한 명이 직원 식당에서 쓰러졌다. 연락을 받고 긴급 출동, 빠르고 정확한 응급조치로 건강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지속적인 응급조치 훈련과 반복 숙달을 통해 만들어 낸 귀중한 결실이다.

“모든 교정기관 의료과가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 19 때도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특히 우리 소는 대구 지방교정청 코로나19 대표기관으로 선정돼 대구청 산하 19개 교정기관의 방역 물품 구입, 재고 관리, 불출 등을 도맡았는데요. 모든 직원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들었지만, 덕분에 대구청 교정기관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니 돌이켜 보면 무척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은 의료과이지만, 최근에는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정복간호특채로 새내기 교정공무원 2명이 충원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함도 없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다. 신입 직원들은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로, 기존 직원들은 꼼꼼히 알려주는 태도로 빠르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 새롭게 하나 된 의료과 직원들은 지금껏 뿐만 궁정성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포항교도소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오늘도 아픈 수용자를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이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껏 응원한다.

#### MINI INTERVIEW

**마음을 열고  
시야를 넓힙시다!**



“예기치 않은 연속적 돌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 역할을 다해 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보이는 환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고 아픔을 참아 내는 환자를 찾아서 건강을 되찾아 주는 것도 의료과의 핵심 본분이라고 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시야를 넓힙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도소 만들기의 출발점입니다.”

의료과 우재택 과장

# 돌멩이 같은 일상에서 보석 같은 인생으로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나의 일상은 단 몇 분 안에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일들 속에서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감사한 순간들을 골라내다 보면  
돌멩이 같은 일상이 금세 보석 같은 인생으로  
탈바꿈한다.

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 피그말리온 효과와 셀프 긍정

오래전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키프로스에 조각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생동감 넘쳤는지 살아 있단 느낌을 줄 정도였다. 조각가는 오래 지나지 않아 여인상과 사랑에 빠졌으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가 여인상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빌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에 감동한 아프로디테는 조각상을 진짜 여인으로 만들어 줬고 둘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조각가의 이름은 피그말리온(Pygmalion).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서사시 『변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심리학자들은 간절한 바람으로 무생물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그의 이름을 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타인의 기대와 관심으로 일의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용어의 정의에 '타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를 '나 자신'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자신을 믿고 긍정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가 더욱 증폭됨을 우

리는 종종 실감하며 살아간다.

여기 미술계의 두 거장이 있다.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입체파를 대표하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다. 고흐는 천재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 이야"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으며, 무명의 삶을 살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피카소도 평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고흐와 정반대였다. "나는 그림으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을 거야!" 그는 다양한 화풍에 도전하고 수많은 습작을 남긴 끝에 입체주의라는 혁신적 사조를 개척했으며 스스로의 다짐을 실현했다. 만약 피카소가 평소 고흐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그림을 그렸다면, 과연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 긍정으로 완성하는 기적 같은 일상

긍정적인 마음은 몸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지난 1993년, 미국 켄터키대학의 데버라 D. 대너 심리학과 교수팀은 노트르담성당에서 수행 중인 수도승 180명의 일기를 분석했다. 하루를 긍정한 내용의 일기를 쓴 그룹과 일상의 고된에 주목한 일기를 쓴 그룹으로 나눠 수명을 조사한 결과, 전자의 85세와 93세 생존율이 후자보다 각각 25%, 34% 높았다.

작년 5월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구현경 교수가 미국 하버드대학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과 함께 미국인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환자 1,967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 환자의 낙관주의 성향을 0~24점으로 환산하고 병증 악화 정도를 측정했는데, 점수가 1점 높아질 때마다 COPD 악화 정도가 5%씩 감소했다. 아울러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검사에서도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평균 9.5m씩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다. 이처럼 몸과 마음, 성장과 성과에 큰 도움을 주는 긍정성은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증진시킬 수 있다. 하루에 하나씩 기분 좋아지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기, 시간이 날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건네기, 행복한 사람 옆에 있기, 많이 웃기,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감사한 것들에 대해 써 보기, 고마움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표현하기 등 조금만 신경 쓰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긍정이 선사하는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긍정적인 일상, 행복한 인생은 우리가 손 뻗으면 닿는 바로 그곳에 존재한다.

# 부산형무소와 근대 행형(상)



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 I. 부산형무소 연혁

### II. 시설 현황

### III. 직원

### IV. 수용자

### V. 처우

### VI. 형무 작업 및 교육·교화

### VII. 기타

## I. 부산형무소 연혁

1905년 12월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제3조에 근거한 칙령 제240호로 통감부(統監府) 및 이사청(理事廳)을 두는 건이 공포됐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발표됨에 따라 종래 영사관에서 취급해 오던 사무를 이사청에 속하도록 하고 영사관 부속의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영사관 감옥사무도 동시에 인계했다. 이로써 이사청감옥이라 개칭해 이사청 소속 경찰관이 담당했다.

1907년 칙령 제295호로 이사청에 전임 간수장 및 간수를 두었다. 당시 감옥은 부산 대청정(大廳町) 현 헌병대 분대에 위치했으나 이전이 필요해 1909년 봄에 시가의 서북 한쪽 하단 가도(街道) 아래에 땅을 마련해 공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준공하고 이전했다. 같은 해 11월 1일 사법권이 위임되는 동시에 감옥사무는 모두 통감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진주감옥은 부산감옥 진주분감이라고 하고 진주감옥 부산분감은 부산감옥 사카노시타(坂ノ下)출장소(현 초량)로, 진주감옥 마산분감은 부산감옥 마산분감이라 각각 개칭했다. 그 이후 일본인을 수용하던 이사청감옥과 구한국정부의 감옥을 합병해 부산에 본감을 두었다.

1910년 7월 마산에 분감사무를 개청(1920년 10월 사카노시타(坂ノ下)출장소 폐지)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합병에 의해 그해 10월 1일 통감부 감옥관제가 실시됐다. 이후 시가의 발전에 따라 이전의 이야기가 나와 원(元)부산수비대의 연병장에 해당하던 현재지를 선정하고 1920년 10월 기공해 1922년 8월 감방, 공장, 취사장 등을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를 완성했고 같은 해 12월 4일 이전했다. 1923년 5월 총독부령 제72호로 부산형무소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월일	인원	내용
1908년	-	이사청감옥 설치에 의해 영사관 경찰서로부터 인계 인원
1909년 2월 15일	34명	부산경찰서로부터 구한국진주감옥 부산분감에 인계 인원
1909년 11월 1일	266명	사법권 이양에 의해 구한국감옥 전 진주감옥 부산분감(160명) 및 이사청감옥(106명)으로부터 인계 인원
1910년 10월 1일	262명	통감부 감옥으로부터 조선총독부 감옥에 인계 인원
1912년 1월 1일	407명	-
1926년 1월 1일	480명	-
1931년 5월 말	669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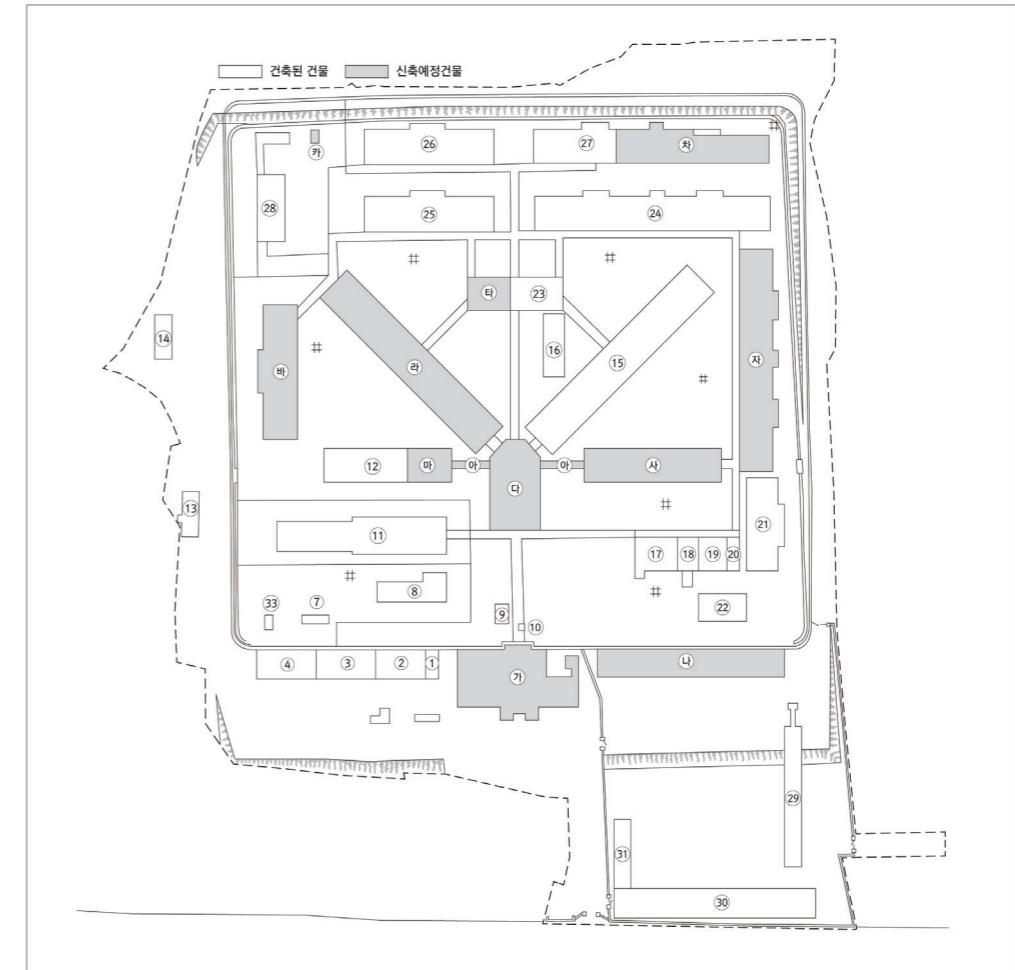
1931년 5월 29일 기준 685명이 수용돼 있었다. 형사피고인은 남자 50명(일본인 7명, 조선인 43명), 여자 3명(일본인 1명, 조선인 2명)이었다. 수형자는 남자 608명(일본인 54명, 조선인 550명, 중국인 4명), 여자 3명(조선인), 노역장유치 남자 20명(조선인) 여자 1명(조선인)이 수용돼 있었다.



부산형무소 전경, 조선형무소 사진첩

## II. 시설 현황

부산형무소는 부산역에서 약 24.5정시(町市)의 서북방인 대신정(大新町) 중앙(630번지)에 있고, 그 영조물 등의 옆에 위치해 예전 위치로부터 이전 당시 예정된 규모보다 조금 크지만, 1925년 행정재산 대정리의 영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예정 공사가 완전히 중지됐다. 이후 1929년과 1930년 말에 구 감옥의 고(古)건물을 옮겨 감방, 공장 각 1동을 증축하고, 1930년도에 벽돌공장 주변 정원 목책 127간(間)을 벽돌 담장으로 개축(改築)하고, 정문 신설 및 불용재(不用材)를 이용해 임시 조사실, 임시 사체실 각 1동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건물을 합쳐 예정 공사의 약 절반에 불과한 시설이었으며, 이후 미완성 상태로 기존의 오래된 현 청사를 비롯해 완성 시기를 예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부산형무소 건물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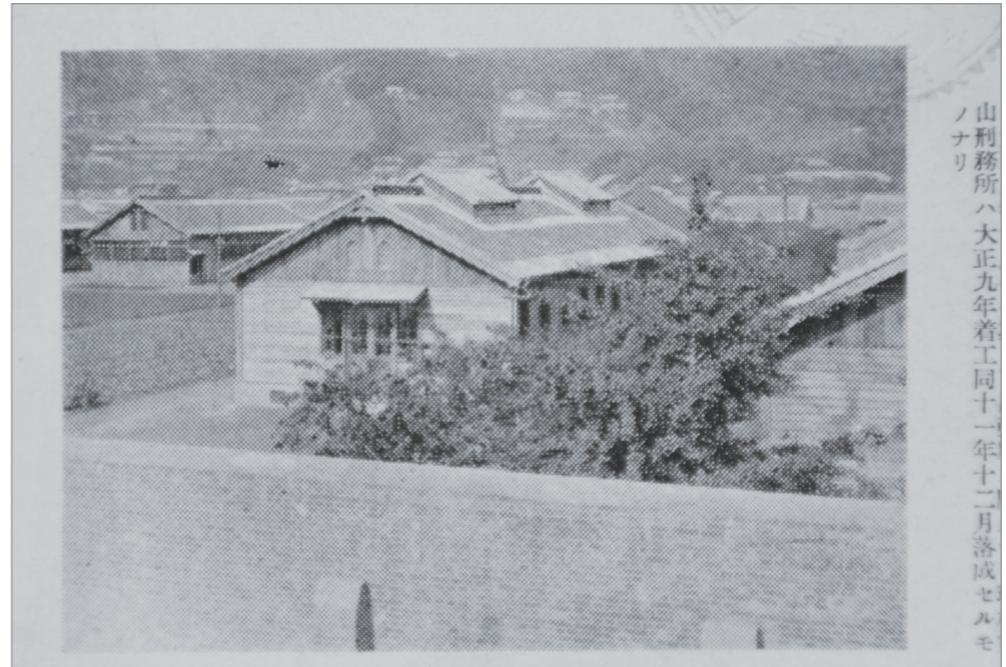
그러나 1931년 5월 건물은 감방 5동(이중 여감 1동, 병사 1동을 포함), 공장, 구내 4동, 구외 벽돌공장 2동, 취사장, 목욕탕 1동, 창고 2동, 차고 1동, 외부정원 벽돌 공장 담 연장 351간(間)을 제외하고 우물 5개소(이 중 3개는 1930년도 신설)로 현재 건물은 총평수 11,485.1평, 건평 약 1,627.69평이었다.

#### 건축된 건물

명칭	평수	명칭	평수	명칭	평수
1. 응접실	8.00	12. 독거감방	70.12	23. 검신실	40.00
2. 서무용도계실	71.90	13. 차고	21.45	24. 제1공장	185.00
3. 작업계실	71.90	14. 변기 두는 곳	10.00	25. 제3공장	105.00
4. 계호계실	72.03	15. 징역감방	191.95	26. 제4공장	105.00
5. 감정실	11.00	16. 물건 두는 곳	28.50	27. 제5공장	64.00
6. 민원인대기실	4.00	17. 취사실	29.40	28. 병감	41.76
7. 직원목욕탕	6.00	18. 기관실	17.50	29. 벽돌굴	1곳
8. 여감방	39.50	19. 목욕탕	22.50	30. 벽돌공장	120.00
9. 접견실	5.00	20. 훈증실	12.00	31. 벽돌공장	25.00
10. 감시대	0.56	21. 창고	69.00	32. 복도	15.50
11. 구치감방	134.12	22. 물건 두는 곳	28.00	33. 화장실	2.00

#### 신축 예정 건물

명칭	평수	명칭	평수	명칭	평수
가. 청사	140.00	바. 공장	106.00	카. 시체실	2.00
나. 창고	224.00	사. 야간분리	90.00	타. 검신실	35.00
다. 중앙감시소	98.00	아. 복도	계 308.00	파. 격리실	15.00
라. 잡거감방	187.00	자. 공장	170.00	하. 의무실	33.00
마. 독거감방	33.00	차. 공장	110.00		



부산형무소, 조선의 행형제도



부산형무소, 조선형무소 연혁사

### III. 직원

#### 1. 직원 정원표

1931년 5월 1일 직원은 전체 103명으로 그중 조선인 38명, 일본인 65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선인은 통역 겸 간수장을 제외하고 직급이 대부분 낮았다.

관직명	일본인	조선인	합계
소장 전옥	1		1
간수장	5		5
통역생 겸 간수장		1	1
보건기사	1		1
의무총탁	1		1
교회사	1		1
교무총탁	1		1
약제사	1		1
간수(남)	38	33	71
간수(여)	2		2
작업교수(教手)	4		4
감정(監丁)	4	4	8
운전수	1		1
기관수	1		1
화부(火夫)	3		3
급사(給仕)	1		1
합계	65	38	103

#### 2. 직원 배치표

서무계, 계호계, 작업계, 계리계, 용도계, 의무계, 교무계 등 7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조선인은 대부분 계호계에 근무했다.

구분	국적	서무계	계호계	작업계	계리계	용도계	의무계	교무계
간수장	일본	1	2	1		1		
	조선	겸	1					
통역생	일본							
	조선							
보건기사	일본					1		
	조선							
의무총탁	일본							
	조선					2		
교회사	일본						1	
	조선							
교무총탁	일본						2	
	조선							
약제사	일본					1		
	조선							
간수부장	일본	6		1				
	조선							
간수(남)	일본	3	23	2	1	2	겸	
	조선	26					1	
간수(여)	일본	2						
	조선							
작업교수	일본			4(2)				
	조선			(1)				
감정	일본	2(4)		(2)		1	1	
	조선		2	1		겸		
운전수	일본					1		
	조선							
기관수	일본					1		
	조선							
화부	일본					1		
	조선							
급사	일본	1						
	조선							
합계		7(4)	62	8(5)	2	7	5	4

### 3. 직원 현황

#### 가. 간수 근속 년수(1931년 5월 1일 기준)

구별	간수(남)		간수(여)		합계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1년 미만	2	1	1		4
2년 이하	4	4			8
5년 이하	13	13			26
10년 이하	4	5	1		10
15년 이하	10	4			14
20년 이하	3				3
25년 이하	2				2
합계	38	27	2		67

#### 나. 연령(1931년 5월 1일 기준)

구별	간수(남)		간수(여)		합계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25세 미만	3	5			8
25세 이상	6	9			15
30세 이상	17	10	2		29
40세 이상	8	2			10
50세 이상	4	1			5
합계	38	27	2		67

#### 다. 간수 결근 일수

구분		1928년	1929년	1930년
질병	일본인	75	81	145
	조선인	199	96	38
간병	일본인	-	-	-
	조선인	14	2	5
사고	일본인	4	-	7
	조선인	-	-	8

#### 라. 간수 비번 근무 일수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조선인과 일본인 직원의 비번 근무 일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각 연도에 조선인이 많은 것은 야근자가 많기 때문이고, 1930년도의 비번 근무가 현저히 많은 것은 감방, 공장 등 배치 개소 증가에 의한 것이다.

구분	1928년	1929년	1930년
일본인	386	418	561
조선인	642	701	979

#### 마. 형무 관리와 수용자와의 비율 비교표

외근 배치 간수 61명으로 이를 1930년 11월 19일 남자 수용 인원 726인에 할당하면 계호 간수 1인당 11.91명이 된다.

구분	간수 인원	수용 인원	간수 1인당 수용 인원	간수(남) 1인당 남자 수용 인원	간수(여) 1인당 여자 수용 인원
1929년 말	71	644	8.94	9.07	4
1930년 11월 19일	73	736	10.08	10.24	4.5

## IV. 수용자

### 1. 서

1926년 이후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1930년 수용 연인원은 252,507명,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690.43명이었다.

구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연인원	197,747	204,647	215,859	235,309	252,507
1일 평균 인원	541.77	560.67	589.59	644.68	690.43

### 2. 수형자(1931년 5월 30일 기준)

#### 가. 죄명별

601명의 수형자 가운데 절도죄가 341명으로 약 57%를 차지했고 강도, 사기 및 공갈, 문서위조 등의 순이었다. 괈호는 여자를 나타내고, 각 죄의 5인 이하는 기타의 죄에 포함했다.

죄명	인원	비율
공무집행방해죄	6	0.99
방화죄	6	0.99
주거침입죄	6	0.99
문서위조죄	38	6.32
위증죄	6	0.99
외설간음 및 중혼죄	6	0.99
살인죄	5(1)	0.83(33.33)
상해죄	13	2.16
약취 및 유괴죄	7	1.16
절도죄	341(2)	56.90(66.67)
사기 및 공갈죄	45	7.49
강도죄	48	7.99
횡령죄	21	3.49

죄명	인원	비율
보안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죄	5	0.83
1930년 법률 제8호 절도죄	16	2.66
경찰범처벌령	7	1.16
기타의 죄	24	3.99
합계	601(3)	100.00(100.00)

#### 나. 연령별

구분	18세 미만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합계
남	2	18	245	204	107	18	4	598
여			2		1			3

#### 다. 형기별

수형자 형기별 내역은 무기형과 15년 이상의 수형자는 없었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수형자 7명이 수용돼 있었으며 구류형은 7명이었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무기	15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미만	5년 미만	3년 미만	1년 미만	6월 미만	구류	합계
남			7	80	111	239	155	2	7	598
여						2	1			3

#### 라. 입소 횟수

범수	초범	2범	3범	4범	5범	6범
인원	217	134	89	55	52	40
범수	7범	8범	9범	10범	11범	
인원	9	5	2	-	1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성범죄 재범자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성범죄 3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윤지인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 I. 서론

## II.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를 재범한 자들이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과 이를 고착시킨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재범과정 및 이 과정에서 겪는 정서와 사고의 변화 등, 성범죄 재범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3회 이상 받은 총 5명의 성범죄 재범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했고,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해 주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성범죄 재범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부적응과 일탈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강한 애정욕구를 가졌던 반면, 친밀한 관계 능력의 부족으로 이성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또한,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나 가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성적 각성과 함께 내적 갈등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호기심과 성적 자극 속에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성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됐다. 친밀감 부재와 감각적인 성적 만남의 결과는 이성 관계에 대해 쉽게 삶증을 내게 하며, 더욱 감각적 성관계에 심취하게 했다. 강한 성적 욕구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일탈과 환상을 가지는 등 성중독의 특성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겪은 비정상적인 성 경험, 문란하고 강압적이고 감각적인 성적 욕구 해소는 성통증과 성인지 왜곡을 강화시켜 성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을 결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무관심 등 애정결핍과 가혹한 가정환경,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고 감각적인 성 경험은 애정결핍을 강화시켜 성에 더욱 고착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깊이 내재해 있는 관심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단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성범죄 재범자에게 맞는 개인 심리치료와 성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에 대한 외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치료적 접근, 그리고 성중독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 주요어: 성범죄, 성범죄자, 성중독, 성범죄 재범, 질적 사례연구

※ 이 논문은 2022년 6월 3일 한국교정학회 교정학술 수상



## I. 서론

2008년 12월경,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했다. 각종 언론매체가 출소 사실을 보도하자 출소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6,843건이 넘었으며, 61만 명이 참여했다. 최근에는 성범죄로 2006년 출소 후 16일 만에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사회적 파장이 커던 대표적인 성범죄를 살펴보면, 김길태, 김수철, 김점덕 등이 있다. 성범죄와 함께 살인은 물론 대상도 임산부와 아동까지 있다. 이들은 이전에 성범죄만 3범에서 12범의 전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기까지 여러 번의 성범죄가 있었다.

성범죄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는 매우 크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해 망상, 환각, 우울, 결벽증, 강박증, 분노조절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정서적 질환은 물론, 각종 신체화증상 등 신체적 고통까지 겪게 된다. 대인관계에서는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반대로 대인관계에 얹매이는 등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윤수경, 2015)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보인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잘 못된 편견으로 2차 피해를 받아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둔 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 등 대리적 외상 경험을 한다(성완영, 임해영, 2019). 즉, 피해자는 물론 가족원 모두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인다.

성범죄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 왔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치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늘리고, 친족 강간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통해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형량이 상향됐다. 200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종래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됐다. 2007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전자발찌)가 도입됐다.

하지만 법적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2019)의 「2019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성범죄의 발생비는 약 1.8배 증가했다. 강력범죄(흉악) 발생 건수 중 성범죄의 비중은 2009년 64.3%에서 2018년 91.0%로

26.7% 높아졌다. 범죄예방정책국(2020)의 '2020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자 수는 2014년 156명, 2015년 154명, 2016년 164명, 2017년 190명, 2018년 18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성범죄와 성범죄 재범이 늘고 있으나, 재범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윤정숙, 김민영, 이태현, 2020;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보호관찰소는 1997년부터, 교정시설은 2006년부터 실시됐다(윤정숙, 박정일, 여운철 2011).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면,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 가능성 평가해 기본(100시간), 집중(200시간), 심화(300시간) 중 하나를 받는다. 또한 언론 보도자나 성도착 등 성적 일탈성이 있는 대상은 추가로 특별과정(150시간)을 실시한다. 그리고 출소를 앞두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는 유지과정(2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성인지 왜곡, 대인관계, 충동조절 등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특성이나 범죄 위험성 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유사하게 구성됐다(윤정숙 등, 2012). 현재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은 외국의 연구와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재범과 유사한 연쇄 범죄에서 범죄행동의 일관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따른 범죄 행동의 특징적 요소들이 존재한다(Wodhams, J. & Labuschagne, G., 2012). 따라서, 외국의 연구를 우리 문화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성범죄 재범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성범죄와 차별되는 성범죄 재범자의 이질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음증, 노출증, 소아성애증 등의 성도착(이수정, 위희정, 2015), 일탈적 성적환상(고려진, 이수정, 2008), 성중독(김은혜, 이주경, 2014; 김태곤, 2014), 사이코패스적 특성(김종오, 유영현, 2007) 등은 성범죄 재범자의 대표적인 이질적 특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재범자의 증가를 고려할 때, 국내 성범죄 재범자의 이질적 특성을 다루는 내용이 부족한 기존의 프로그램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성범죄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성격특성이나 재범 위험성,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집중됐다. 보호관찰영역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나 제도개선을 통한 재범방지, 이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양적연구에 치중됐다. 이 연구들은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을 제공했다. 하지만, 양적 연구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성범죄 이전에 형성된 특성인지, 성범죄 이후 형성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형성과정이나 유지, 성범죄 재범의 과정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자의 특성과 원인,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국내의 성범죄 재범자에 관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내면의 동기와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범죄 3번 이상의 유죄 선고자로 했다. 이들을 통해 일반적인 성범죄자와 다른, 성범죄 재범자의 특이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범죄 재범자의 특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성범죄 재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층적 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치료적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성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1) 성범죄자의 가족 요인 및 성격 특성

청소년의 성폭력은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및 애착의 정도, 지지적 태도 등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엽, 최지현, 이효정, 김기현, 2010. 김정란, 김경신, 2010). 신체적 학대는 성적 불쾌감을 줄 가능성은 증가시키고,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거나 의사소통이 단절될 때, 성 문제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Starzyk, & Marshal, 2003).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가족 간 결속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적을수록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 행동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부모의 방임 및 부재 등 부정적 양육 태도의 영향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아동의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기 가족 규칙과 체계적 활동의 부재는 성인기 초기까지의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arbare, et al, 1998; Shanon, & Mathias, 2007). 이런 부모의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양육 태도와 청소년기에 강한 성적 호기심이 적절한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왜곡된 강한 성적 자극에 노출되면 성폭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김은화와 전귀연(2007)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같은 환경요인과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가족 요인은 모두 공격성을 통해 성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아동의 성장기 과정의 다양한 학대, 방임 등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성범죄자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성범죄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표현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의 결여, 친밀감 형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애정결핍으로 이성에게 집착하거나, 성행위에 몰입하거나, 이성에게 과도하고 일방적으로 요구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이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악순환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나 주요 타인 등으로부터 이성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정서적 표현이나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이성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애정욕구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나 사회로부터 사회 규범과 도덕 등을 습득하지 못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타인의 감정, 권리, 소망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속이고

조종하며, 충동적이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자책감의 부족 등, 반사회적 성향(antisocial personality)이 높다.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 이입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감 능력의 결핍을 보인다(Hudson, et al, 1993; 김종오, 유영현, 2007). 이와 다른 결과의 연구도 있는데, 꾸준하게 제시된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인 공감 능력의 저하가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제외 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성범죄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우울과 분노를 많이 느끼고, 일반 범죄자보다 충동적으로 사고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성욕을 통제하는 한편 성행위보다는 환상이나 자위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고, 일반인처럼 조망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인지정서조절을 하기보다는 자기 비난, 파국화를 더 많이 사용한다(정민철, 조영일, 2015; 정민철, 2012).

82개의 성범죄 재범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반사회적 성향, 이상 성기호증(deviant sexual preferences)이 성인이나 청소년의 성범죄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보았다(Hanson, & Morton-Bourgon, 2005). 또 다른 특성으로는 자기애(narcissism)이다. 이런 자기애는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추구하는 경향을 부추기고, 타인(강간 피해자 포함)의 감정에 대한 이입이 부족하며, 스스로 위대한 사람으로 칭하며, 자신의 성욕이 거절됐을 때, 그 반항이 성욕을 촉진시키며, 자신의 욕구를 거부하거나 좌절시켰던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의지가 생기고, 그 반응으로 성적 강압행위가 나타난다(Bushman, et al, 2003).

## 2) 성범죄자의 인지 왜곡 및 사회문화적 요인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나 이용률,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사회가 됐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다수의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성범죄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위험 변인으로 음란물을 대한 노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음란물은 과거에는 잡지, 서적 등을 통해 접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 세상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음란물을 접하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최정임, 정동훈, 2014). 이같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이용은 성충동을 자극하거나 성행동의 강화 및 학습을 통해 성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보기기의 발달에 따른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 가해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김재엽, 이순호, 최지현, 2011).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가족 간의 외형적 모습이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정서적 교감 및 의사소통이 미흡한 상태

를 나타낸 결과 환경요인인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가족 요인인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은 모두 공격성을 통해 성범죄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진석, 김재엽, 황선익, 2018).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은 성인지 왜곡은 물론 자극적인 폭력과 일탈적 성행위로 강간 통념(rape myths)을 강화시킨다. 성범죄자와 일반 남성의 강간 통념을 비교한 연구에 일반 남성에 비해 성범죄자의 강간 통념 수준이 높았다(유재우, 송병호, 2009).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가 높은 사람은 객관적인 성범죄 상황을 강간 통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에 대한 인지 왜곡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언어적·비언어적 단서를 왜곡해 받아들인다(이석재, 최상진, 2001). 이러한 강간 통념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강간 통념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가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남성 본위의 사고와 연결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힘, 권력, 권위주의의 표현이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강간 통념은 인간에 대한 폭력수용 척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고, 폭력수용 척도는 성역할 척도의 남성성과도 정적 상관이 있다(이석재, 1999).

## 2. 성범죄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정적 위험 요인(static risk factor)과 역동적 위험 요인(dynamic risk factor)으로 보고 있다. 정적 위험 요인은 변할 수 없는 과거 범죄자의 특성으로 첫 성범죄 연령,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력, 혼인상태, 피해자 요인으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면식 여부, 비친족 여부 등이 포함된다. 즉 범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범죄의 과거력이 많을수록, 피해자가 남성 혹은 아동일 경우 또는 비친족이거나 비면식일 경우 재범의 가능성성이 높아진다. 역동적 위험 요인은 성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로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역동적 위험 요인은 안정 요인(stable factor)과 급성 요인(acute factor)으로 세분된다. 안정적 요인으로 비정상적 성적 욕구, 아동에 대한 성범죄 각성 정도, 성범죄에 대한 허용적 태도, 인지 왜곡, 피해자 공감결핍, 낮은 자아존중감, 분노, 약물 남용, 충동성, 성격장애 등 10개의 요인이다. 급성 요인으로는 성적 환상, 치료 중 비행 행동,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 위험 상황과 재발 예방기술에 대한 부족한 자각, 치료 기간, 치료자와의 불화, 고립, 고용상태, 비행적 사회환경, 생활방식, 사회적 지지 결핍, 정서장애 등으로 나타났다(Craig, et al, 2003a).

성범죄 재범요인 척도 중 역동적 요인에서 성적 욕구, 충동성, 성적환상, 성일탈적 생활

양식, 성적 강박성, 약물 남용, 일탈적 성적 신호, 친밀감 결핍 등은 성중독의 대표적인 요소이기도 하다(윤가현, 2018). Marshall & Marshall(2006)의 연구를 보면, 성중독이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중독이 없는 성범죄자들보다 어린 시절 성 학대 피해경험이 더 많고, 성적 집착도 더 높게 나타났다. 김은혜/이주경(2014)은 212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알코올과 약물, 성중독의 3가지 중독 요인이 성범죄 재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한 결과, 성중독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성중독자일수록 성범죄 재범이 증가했다. Abel & Becker(1985)는 성범죄 재범군에 있어 고위험군이 지니는 특성을 중 재범과 가장 관련성을 지니는 요인은 가학적인 성적 환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가학적 성향을 포함하고 복합적인 성도착적 증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Abel & Harlow(2001)는 소아성애적 성향을 가진 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보다 평균 10배 이상 누범 한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많은 연구에서(고려진 & 이수정, 2009; 이수정, 2012; Hanson & Morton-Bourgon, 2005; Ryce, 1998) 성도착을 포함한 성적 일탈적 기호(deviant sexual interests)도 재범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보고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경우, 일반 성범죄자보다는 불안이나 우울증을 보이고, 계획범죄이고, 더 일탈적인 성적환상을 갖는 등 성범죄 재범자의 이질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 유지, 강화돼 재범에 이르는지 면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연구 접근은 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탐구방법과 구별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풀어 가는데 선택할 수 있는 연구설계에 가깝다. 즉 질적 사례연구는 연구자의 관심이 특정 한 사례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이 유일한 관심인 경우로 내재적 사례연구라고 하며,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이 시사해 줄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연구자의 주요 관심인 경우는 도구적 사례연구라고 한다(유기웅 외, 2018, 개정판). 따라서, 본 연구는 성범죄 재범자의 특이성 형성부터 어떻게 재범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연구로 내재적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로 3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

활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성범죄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코사코리아(CoSA Korea)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12까지 약 1년에 걸쳐 수행됐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멘토링을 받는 코사코리아 내 상담실에서 참여자마다 1회당 1시간 30분 내외로, 총 2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 면담에 앞서 인터뷰는 보통 2회 실시되고, 1시간 30분 정도씩 이루어지며, 2회의 면담 내용이 부족한 경우 추후 이메일 등의 면담이 있을 수 있음과 중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연구 참여에 대해, 교통비나 시간 할애에 대한 실비를 보상했다. 심층 면담의 녹음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실시했고, 종료 후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청취해 전사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연번	성별	연령	학력	성범죄 경력	직업	결혼(동거)
1	남	49	대졸	공연음란 6범	무	이혼 동거 없음
2	남	47	고졸	강간 등 5범	자영업	미혼 동거 없음
3	남	47	고졸	강간, 성추행 3범	무	미혼 동거 3회
4	남	26	고졸	카메라 등 촬영 3범	무	미혼 동거 없음
5	남	50	대졸	강간, 성추행 3범	회사원	재혼 동거

#### 2. 자료분석과 기술

질적 사례연구는 독특한 사례, 기술되거나 상세히 알려질 필요가 있는 사례, 그것 자체로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특별한 이슈, 문제나 관심사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질적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13). 질적 사례연구에서 분석방법은 연구질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목록화, 범주화하면서 사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주제나 패턴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이다(유기웅 외, 개정판).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귀납적 주제 분석을 했다. 인터뷰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여러 번 읽으면서 포괄적으로 분석해 주제 개요를 얻고, 원자료를 포괄적으

로 이해한 후에 원자료를 낱낱이 쪼개어 의미 단위로 명명했다. 이후 의미 단위 중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찾아 패턴 분석을 하고, 이렇게 찾아진 패턴을 분류해 범주로 개념화했다. 이에 대해 2명의 동료지지 집단을 통해 여러 차례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범주분석을 통해 찾아낸 범주들을 연결해 주제 분석을 실시했다(Glaser & Strauss, 1967). 분석의 전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교와 중립적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통합하는 주제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성범죄 재범자들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선택했다. 자기 보고식의 설문지 답변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특성이나 재범요인과 그 정보 등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특성과는 다른 성범죄 재범자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기 보고식에 대한 부정확성으로 생기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심층 면담을 선택했다.

본 연구는 성범죄 재범의 강의 의지와 동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범죄로 3회 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정했다. 참여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경험과 변화를 통해 성범죄 재범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 성범죄 재범자 특성에 대한 형성과 변화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성범죄 재범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성범죄 재범경험은 어떠한가?'이다.

### 3. 연구 윤리 및 엄격성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수집을 실시했고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와 인터뷰의 목적,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렸으며, 인터뷰 및 녹취, 자료분석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등 자료수집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결과와 해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명의 연구동료를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삶의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멘토링을 10년 이상 해온 상담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장 실무자와 보호관찰 분야에서 근무하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1명을 동료지지집단으로 구성해 연구의 방향성과 연구자의 편견 및 오류 등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윤리감독자로 활용했다. 연구결과의 엄격성 및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 개인의 자료분석 내용을 참여자에게 보내어 참여자의 의견을 구해 연구결과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범경험에서 드러나는 특성은 총 67개의 의미 단위와 9개의 범주를 구성했고 이렇게 도출한 범주를 '관심받지 못한 삶', '성적 트라우마의 피해자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성중독에 빠져 성적 일탈적 환상의 추구와 성충동의 노예가 됨',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에 의한 범죄 인식의 결여'로 4개의 주제에 맞게 배열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범죄 재범경험에서 드러나는 특성으로 분석한 주제와 범주는 <표 2>와 같다.

<표 2> 분석결과: 주제와 범주

주제	범주
관심받지 못한 삶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시작된 부적응과 일탈 강한 애정욕구와 달리 친밀한 관계 맺음의 미숙으로 생기는 이성 관계의 어려움
성적 트라우마의 피해자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어린 시절, 성 피해로 생긴 성적 각성과 성적 갈등 범죄 인식도 없이 호기심으로 시작된 성 가해의 경험
성중독에 빠져 성일탈적 환상의 추구와 성충동의 노예가 됨	친밀감 형성 능력 부재로 인한 관계의 삶증과 감각적 성관계의 심취 강한 성욕구와 충동조절의 어려움 성 일탈적 환상의 추구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에 의한 범죄 인식의 결여	왜곡된 성인식으로 범죄 인식이 결여됨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

### 1. 관심받지 못한 삶

#### 1)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시작된 부적응과 일탈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평소에 작은 칭찬이나 따듯한 말도 거의 듣지 못했고, 자신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고쳐야 할 것, 잘못 등 부정적인 것에 초점이 돼 계속해서 지적받고, 심한 경우 가정폭력에 노출돼 무의식적으로 폭력성에 무감각해져 자신도 폭력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주로 아버지랑 대화하게 되면 내가 뭐 잘못 했다든지, 성질나면 부정적인 얘기를 주로 들었지,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 이후로는 아버지를 피해 다녔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죠.” (참여자1)

“사랑은 많이 못 받았죠. 어머니는 내가 차별을 많이 받았고 장남, 장손을 쟁기고, 그 속에서 소외된 느낌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강했고, 감수성도 예민했고...” (참여자2)

“아버지 술 드시면 폭력성으로 나오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습득된 것 같아요.” (참여자2)

“열다섯 살 때 집 나와서... 어머니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3~4년 정도 다른 사람들 보다 덜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애정이 결핍된 것 같아요.” (참여자3)

“저랑 동거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포근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감싸주고 이런 게 많아서 연상을 좀 제가... 어머니 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 때문에 두 번의 동거를 그런 분들하고 했었는데...” (참여자3)

“대화를 자주 많이 한다든지, 고민을 잘 들어주신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중략) 엄마는 항상 엄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4)

“술 먹으며 도박을 하다 이성을 잃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돈을 요구하며 소리치고 때렸어요. (중략)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참여자5)

참여자들의 부모 간에도 애정적인 관계는 보기 힘들고, 심지어 외도로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모의 성관계에서도 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인 관계가 참여자의 어린 나이에 남녀관계나 성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추후 이성관계나 성관계에 있어 강요나 폭력을 쉽게 행하거나 이성의 메시지를 잘 못 인식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가 고 2~3학년 때, 외도하셨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았죠. 이복동생도 생기고...” (참여자1)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어머니랑 성관계할 때도 약간 강제성 있게 하시고... 영향을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2)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본처는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후처.” (참여자3)

“어렸을 때, 깨보니 엄마와 어떤 아저씨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오면 돈을 주며 오락실 가서 놀고 오라고 했어요.” (참여자5)

부모의 조기 부재나 한 부모 등으로 생기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기 어렵게 만들어 자녀를 방임과 방관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부모의 무관심은 자녀들이 학교, 또래문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배회하며, 하위문화를 쉽게 접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같은 학교나 또래문화의 부적응은 퇴학이나 자퇴와 같은 학업 중단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인다. 이와 더불어 등교하지 않으면서 불량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 부적응을 겪는 또래의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임됐다가 청소년기에 가출이나 하위문화 속에서 일탈행동을 하며 방황했다. 심한 경우 최근 몇 년 전에 심각성이 대두됐던 학생 간 집단 가혹 행위나 폭력, 특히 집단 성폭행 같은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머니가 장사하시느라 바쁘시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나 이 든 어른들한테 성추행당한 아이들 많을 거예요.” (참여자2)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면서 성당에 가서 일했었어요. 잠깐, 성당 일해주다가 성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을 나왔어요.” (참여자3)

“어머니는 아직 애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어먹여야 한다고, 맨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니까, 집에 계실 때가 없으니까, (집을 나왔는데) 찾을 새가 없으신 거죠.” (참여자3)

“어머니 몰래 그냥 집에 자퇴서 갖고 와서 자퇴하고, 집을 나와 봉제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참여자3)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범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긴 있었거든요. 저를 장물로 잡아서 그때 처음으로 소년원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참여자3)

“그런 성추행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어렸을 때는... 그게 죄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3)

“간섭 안 하고 방임? 자유분방하게...” (참여자4)

“비디오를 보고 그거에 의한 어떤 호기심... (중략)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저는 정말 성과 관련된 사고를 많이 쳤었는데, 그런 것들로는 한 번도 야단맞은 적이 없어요.” (참여자5)

## 2) 강한 애정욕구와 달리 친밀한 관계의 미숙으로 생기는 이성관계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이성과의 교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외모나 경제력 등 외형적인 조건과 이성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나 소심함, 자존심 등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성을 사귈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심리적 위축은 거듭되는 이성 관계의 실패나 어려움을 일으킨다. 이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 열등감과 자기비하에 빠져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든다.

“일단 제일 콤플렉스가 키가 작은 거... 제 자신이 열등감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1)

“내가 뭐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잘 모르는 상태인데 욕구는 생겼던 것들이 공격성으로 표현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2)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재주... 말재주 또는 표현력, 그다음에 사람들을 꼬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취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참여자2)

“(이성관계)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 안 있으면 조용히 가더라구요. 아무 이유도 없이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참여자3)

“이성으로 느끼고 만나고 했던 사람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전혀 없어요. (중략) 저 자신한테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던 게 커었던 것 같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게다가 또 말주변도 없어서 거의 주변에 여자가 없었어요.” (참여자4)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도망 나왔고... (중략) 13살 때,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 알 수 없는 허전함에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그 목마름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5)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지내야 하니까.” (참여자5)

참여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임됐다가 청소년기에 가출이나 ‘학교 밖 학생’ 등과 함께 일탈행동을 하며 방황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지지와 수용 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따듯한 정서적 표현이나 배려와 존중이 필요로 한 깊은 관계는 경험이 적기에 서툴다. 자신의 정서적 결핍을 채우고 싶은 욕구는 강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신뢰를 쌓는 기간을 기다리기에는 조급하며, 서툴게 타인에게 요구적이거나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주장 등, 거친 태도를 보인다. 이로 인해 관계는 무미건조하고 악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성에게 더욱

그렇다. 이성이 생기거나 결혼까지 한 경우에도 이성과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성과 관계 시작도 어렵지만, 만나는 중이라도 정서적 유대가 생기지 않아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기에 다른 이성을 찾거나 일회성 만남을 찾는다. 따라서, 깊은 애정의 관계에서 성적만족감, 충족감을 얻을 수 없기에 감각적이고 말초적 자극으로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와이프가 있지만,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못 해서..., 관계를... 전혀 성욕을 풀 수 없으니까.” (참여자1)

“네, 근데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저도 잘..., 감각이 없어요.” (참여자1)

“계속적인 관계나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인 성관계(공연음란)를 갖게 되면서 일시적이나마 그 여자와 특별한 관계고, 그걸로 인해서 흥분되고, 그걸로 어쨌든 제 성욕을 해소하면서 만족을 했잖아요.” (참여자1)

“그냥 새로운 자극이죠.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냥...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스트레스 해소지요.” (참여자2)

“그러면 만약에 첫 경험이 그냥 이렇게 애인과 사귀면서 사랑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랬으면 제가 이런 사건들이 안 나왔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2)

“연애했을 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부부관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창가를 가던, 다른 아가씨랑 하게 되던... 자꾸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 자극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극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유혹에 많이 약해지죠.” (참여자2)

“성관계 한두 번 하고 나면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여자3)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은 저도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참여자3)

“소개팅도,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성관계는 지금까지 없어요. (중략) 그만큼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4)

“항상 여자애들한테 여자친구든 아내든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참여자5)

“애인이 없는 허전함을 술과 유흥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하룻밤에도 여자를 몇 번씩 바꾸어가며 잠자리를 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야동을 보며 혼자서 해결했어요.” (참여자5)

## 2. 성적 트라우마의 피해자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 1) 어린 시절, 성 피해로 생긴 성적 각성과 성적 갈등

참여자 중에는 어렸을 때, 어른(동성이든 이성이든)에게 성적 피해를 경험했고, 트라우마로 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성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적 피해를 겪으면서 느끼는 놀람, 당혹감, 긴장 등으로 충격과 함께 거부감,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부정적 정서와 달리 성적 자극에서 오는 흥분과 쾌감까지 느꼈다는 것에 더욱 충격을 받는다. 또한, 이런 심리적 갈등 속에서 돈과 같은 유혹이든, 성적 쾌감이든, 이것을 다시 얻기 위해 지속하는 자신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자기 비난을 하며, 자신에게 성적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성인이 돼서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강제에 의한 것 이든, 좋아서 한 것이든, 이른 나이에 성적 노출은 강한 자극과 충격으로 남아 있어 성인이 돼서도 성과 관련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밖에 놀러 나온 할아버지들 집에 놀러 갔다가 이걸 자위행위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내 것을 해주고, 내 것을 자기 엉덩이에 갖다 대고, 물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한, 두 번이 아니라 꽤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오백 원, 천 원 용돈 주고 먹을 거 과자라도 주고 하니까 그게 뭐 잘못된 성행위인지 도 난 모르고.... (중략) 그게 사정이란 걸 그때 알게 되면서 처음 그 부분에 쾌감을 거기서 느껴버렸던 거예요. 뭣도 모르면서... 자꾸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몸에...” (참여자2)

“저는 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스무 살 넘으면서 그 영감탱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었구나 분노가 생긴 건 있고.” (참여자2)

“12살 때 처음으로 성관계. 그분이 장애인 분인데, 목욕 좀 시켜 달라고 해서 시켜 주다가 거기서 당한 거거든요.” (참여자3)

“그 순간에 진짜 막 충격이 와서 머릿속이 다 헝클어졌어요. (중략) 그런데 이게 성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더 충격을 먹었죠. 그러면서 막 괴로워했거든요. 사정하고 나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중략) 그냥 저 혼자 끙끙 앓다가 몇 개월 동안 그 누나를 피해 다닌 것 같아요.” (참여자3)

“열다섯 살 때 공장에서 일할 때, (중략) 그 누나가 술을 한잔 먹고 왔어요. 방에서 자는데 저를 껴안고 몸을 막 더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기가 되더라고요. 같이 성관계를 했는데...” (참여자3)

“엄마 아빠 침대에서 어떤 비디오를 봤던 게 기억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그

랬었을 것 같아요. (중략)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하루에 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참여자4)

“15살 때쯤, 옆방 누나가 속옷을 입지 않고 낮잠 자는 걸 훔쳐보며 큰 충격이었고, 극도의 긴장감 속의 흥분감을 느꼈어요. 왼쪽 가슴에 손을 대었고 손끝과 손바닥에 느껴진 감촉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어요.” (참여자5)

### 2) 범죄 인식도 없이 호기심으로 시작된 성 가해의 경험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 성 피해의 경험도 있었지만, 이런 성 피해 경험에 더해 청소년기에 들어서 강한 성적 호기심이 성적 접촉을 가볍게 생각하며 성범죄 가해자로서의 경험을 시작했다. 참여자들의 청소년 시기에 또래 여자를 대상으로 갖은 초기 성 경험은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의 발산으로 시작됐기에 친밀감에 의한 관계이기보다는 서로가 호기심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강압이나 위압감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대 또래의 여자도 참여자와 비슷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집단을 이루며 지내면서 성에 대해 서로 가볍게 생각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로 청소년 시기에 성범죄 가해자가 돼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범죄성이 길러지거나 인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업 시간에 제가 자위를 했죠.” (참여자1)

“중1 때, 우리 어렸을 때 서로 호기심에 만져보려 하고, 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제가 했었어요. 보고, 만져보고...” (참여자2)

“징역에 가면 범죄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걸 배웠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11살, 12살 때, 어? 틀리네. 이라고 조금 만져보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런 성추행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냥 애들하고 어울려서 다 친구들이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3)

“15살 때, 거기 들어가서 같이 춤추고 하다가 여성 만나면 그 여성들한테 이제 좋나 물어보고 한번 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차비라도 줄 테니까 가자 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정도는 갔었으니까요.” (참여자3)

“6, 7살 때부터 야동을 알고 있었어요. 비디오를 보고 그거에 의한 어떤 호기심에, 그거를 유치원에 가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제 것을 만지게 한다던가, 내가 개 것을 만진다던가.” (참여자4)

“처음에는 죄책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게 된다는 사실에 기뻤던 것 같아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극도의 긴장감 속의 흥분감을 쫓아다녔어요. 고교 때는 버스에서 여자의 몸을 더듬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참여자5)

### 3. 성중독에 빠져 성 일탈적 환상의 추구와 성충동의 노예가 됨

#### 1) 친밀감 형성 능력 부재로 인한 관계의 싫증과 감각적 성관계의 심취

참여자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성과의 관계에서 애정이나 정서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서보다는 감각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정서적 교감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감각적인 관계에 치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감각적인 자극이 약화되거나 둔감해지며 싫증을 느끼고, 색다른 감각적 자극으로 자극을 높이고자 다른 이성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극으로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성관계 대상자, 또는 성 피해자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랑한다고 육체적인 관계가 더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1)

“제가 싫증을 빨리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중략) 만약에 다른 여자와 도 오래 하게 되면 싫증을 느낄 것 같아요.” (참여자1)

“열 여자 싫어하지 않는 본능인 것 같아요. (중략)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니까 그런 꽤 감각적인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인지도 되어있어, 그렇게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은 공격성이 깔려 있어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럽다기보다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놓였을 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참여자2)

“맨날 지겹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 보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적인 걸로 나올 때 그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싫은 게 아니라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적인 욕구도 강한 것 같아요.” (참여자2)

“자기 충동을 제어 못 할 때 그때 벌써 성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떠 버렸으니까. 몸이 기억한다고 해야 되나요. 짜릿짜릿한 감각들을...” (참여자3)

“스릴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중략) 성취감이 컸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더 자극됐어요.” (참여자4)

“불특정 다수였으니까. 찍을 때는 또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그런 거 자체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성적으로는 와이프랑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참여자5)

“남편이 있는 여자애에 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좀 저도 어릴 때라,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때여 가지고, 그때는...” (참여자5)

#### 2) 강한 성 욕구와 충동조절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어려서 일찍 성과 관련한 강한 자극을 받아 트라우마가 됐으나 강한 성적 자극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추구하면서 습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감각적인 강한 성적 자극은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결핍의 허전함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성적 자극으로 잠시 채워지는 듯한 착각으로 더 강한 성적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깊은 정서적 관계가 없는 성관계 이후 후회도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고자, 또 허전함과 정서적 복마름을 일시적 성적 욕구 해소로 채우려는 하기에 성적 욕구 조절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자위는 그때 당시 뭐 거의 매일. 두, 세 번씩은 어쩌다인 거고.” (참여자1)

“습관이나 버릇이 된 거죠. 중독되면 끊기가 힘들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행동한 횟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왔기 때문에...”  
(참여자1)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만족감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기에...” (참여자1)

“강하면서도 본능적인 이런 부분을 이십 때까지도 컨트롤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3범 때 그런 욕구가 있는데 불구하고 컨트롤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진 거예요.”  
(참여자2)

“불안, 초조감 속에서 그 성취를 얻었다는 성취감으로 변질되는 부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 감각적인 중독이나 자극으로 남아 버린 거죠.” (참여자2)

“나는 근데 성적인 이게 제일 처음 겪은 꽤감이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못 끊는 것 같아요.” (참여자2)

“아! 내가 일도 못 하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러고 있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계속 하니까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계속 쌓였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밖에 나갔는데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적인 욕구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참여자3)

“자기 충동을 제어 못 할 때 그때 벌써 성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떠 버렸으니까. 몸이 기억한다고 해야 하나요.” (참여자3)

“중독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습관화 되어있는 거죠.” (참여자4)

“아동을 그만 보자고 다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실패하고… 하고 싶은 욕구를 못 이겼던 것 같아요.” (참여자4)

“애인이 없는 허전함을 술과 유흥으로, 하룻밤에도 여자를 몇 번씩 바꿔가며 잠자리를 했어요.” (참여자5)

“아내에게 매일 성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중략) 저한테 이제 약간 그 중독증이라는 게 있는데, 성욕 중독증이라는 게 있는데.” (참여자5)

### 3) 성 일탈적 환상의 추구

참여자들은 강제적인 성관계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거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험은 없어도 가출이나 학교 부적응 등 사회적응의 어려움으로 일찍부터 유사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호기심이라는 변명하에 여자아이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됐다. 또한 일명 야동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성 경험으로 성이나 성관계에 대해 일탈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갖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일탈적 성적환상을 가지고 이를 생활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나의 성기를 호기심이라든지, 보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거든요.” (참여자1)

“여자가 거부 못 하면서도 순종적이면서 불안해하면서도 내가 해버렸을 때 오는 그 짜릿함이라고 할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욕구를 찾으려고 쫓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2)

“내 여자한테 갑자기 막 강제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중략) 술 취하면 공격적인 성적인 관계도 하더라고요.” (참여자2)

“직업여성도 만났고 또 나이트 같은데도 가끔 가기도 하고, 팬찮다고 하면, 돈 주고 모텔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죠. 어렸을 때는 월 한 1~2회, 많을 때는 3회 정도 했어요.” (참여자3)

“일상을 좀 넘어선 이제… 강제로 한다든가, 몰래 하는 걸 좀 많이… 잠들어 있는 여자를 한다든지, 나이 때도 좀 어린.” (참여자4)

“극도의 긴장감 속의 흥분감과 엄마의 편안함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성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5)

### 4.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에 의한 범죄인식의 결여

#### 1) 왜곡된 성인식으로 범죄인식이 결여됨

성범죄 범죄가 만취한 상태에서 인지와 통제능력이 떨어져 발생했다며, 많은 성범죄자가 음주를 원인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참여자들도 1명은 모든 성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지만, 5명 중 3명은 전혀 음주한 경우가 없고, 나머지 1명은 음주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 상태에서 사건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음주는 방아쇠의 역할, 촉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나 불안으로부터 회피, 그리고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의 결여에 따른 애정욕구, 성적 욕구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 문제가 성범죄로 행동화하기까지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합리화의 주된 요인이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이다.

“당연히 이렇게까지 했으면 허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확신이 서면서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밝혀도 무시하고 간다는 거죠. (중략) 내가 여자의 은밀한 부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자도 나의 성기를 호기심이라던지, 보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거든요.” (참여자1)

“룸메이트 같은 것도 알아봤다고 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개방된 애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참여자2)

“합의를 먼저 하고 제가 돈을 주긴 하지만 그건 차비 조로 주는 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연락도 주고 받기도 하고, 몇 번씩 만나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런 여자들도 있으니까. 좀 색 다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3)

“안 걸린 게 많으니까 내가 좀 조심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런…” (참여자4)

“남녀 간의 섹스에 대해서 음란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여자4)

“같이 회식하고 1:1로 남았잖아요. 남았을 때는 애가 나를 좋아하는 거 같다 하는 그런 마음에 들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애랑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5)

“8살 정도 어린 여자애와 한 달에 한 번씩 돈 주고 성관계를 했었죠.” (참여자5)

## 2)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

참여자들은 술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성 욕구가 강한 시기에는 외출도 하지 않는 등 나름 자신의 방식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지가 약해지고, 성 충동은 강해지면서 조금씩 성통념이나 성인지 왜곡, 그리고 술이 촉발 요인이 돼 ‘한 번만’, ‘조금만’ 등으로 타협하기 시작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범죄실행의 심리적 준비의 모습을 보인다.

“항상 안 하려고 버티다가도 안 잡히고, 안 걸리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이제 들면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참여자1)

“이 보호관찰 기간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받았다고 한 번씩 출석도 하고 뭐하고.. 2년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중략) 성욕이 왕성해졌을 때 그런 경험을 두려워서 못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평생 사건에 이렇게 안 휘말렸을 텐데... (하략)” (참여자2)

“그래도 둘이 합의하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합의를 먼저 하고 제가 돈을 주긴 하지 만 그건 차비 조로 주는 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3)

“안 걸린 게 많으니까 내가 좀 조심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런...” (참여자4)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화가 나고 술을 먹게 되면서 그 술 조절을 못 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참여자5)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하여금 성범죄 재범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외에 성범죄 재범자들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 성범죄 재범자에게 특화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총 3명 참여자를 2회씩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주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한 결과 첫째, ‘관심받지 못한 삶’의 주제는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시작된 부적응과 일탈, 강한 애정욕구와 달리 친밀한 관계의 미숙으로 생기는 이성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적 트라우마의 피해자에서 성범죄 가해자로’의 주제는 어린 시절, 성 피해로 생긴 성적 각성과 성적 갈등, 범죄 인식도 없이 호기심으로 시작된 성 가해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중독에 빠져 성적 일탈과 환상, 성충동의 노예가 됨’의 주제는 친밀감 형성 능력의 부재로 인한 관계의 싫증과 감각적 성관계의 심취, 강한 성욕구와 충동조절의 어려움, 성적 일탈과 환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에 의한 범죄인식의 결여’의 주제는 왜곡된 성인식으로 범죄인식이 결여됨,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범죄자의 특성 및 재범원인에 대한 기존 설문 또는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들에서 이들에게 성인지 왜곡, 성충동, 사회성 부족, 공감능력 결여 등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윤정숙, 최이문, 류부근, 윤달님, 최관, 최걸, 강태경, 2014; 김종오, 유영현, 2007), 중독과 관련한 연구(김은혜·이주경, 2014) 또한 설문이나 문헌 조사를 통해 성도착이나 여러 중독 중 성중독이 재범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자의 특성들과 중독요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며, 상호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재범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었다. 본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성범죄 재범자의 특성 형성에 열악한 가정환경과 애정의 결핍, 그리고 일탈적 환경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탈적 환경 속에서 쉽게 성적 피해와 가해의 성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성적 감각의 각성과 죄책감 등으로 심리적 갈등이 있었다. 성적 트라우마에 의한 성적 각성과 열악한 가정환경에 의한 애정욕구가 성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했다. 강한 애정욕구가 성적 집착으로 표현되면서 일반적인 이성관계에서 친밀감 형성보다는 성적 자극과 쾌감에 몰두하게 됐으며, 일상 스트레스는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친밀감 형성 능력의 부재는 성적 일탈 환경을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성 경험은 왜곡된 성인식을 형성해 일탈적 성적환상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인

지 왜곡은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한 합리화가 범죄인식 결여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합리화는 자기의 범죄나 비행 행위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들로부터의 비난을 중화(합리화, 정당화)해 완화함으로써 범죄 등 비행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중화기술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의 위반을 용인하고 양심의 가책이나 억제력을 느끼지 않게 됨으로써 범죄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Sykes and Matza, 1957).

연구결과에 따라 성범죄 재범에 대한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자들의 성인지 왜곡이나 성통념을 성범죄 유발요인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치료프로그램도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인지행동치료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의 성인지 왜곡과 성통념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성범죄자 개인의 성적 성향에 맞는 특정 상황이 되면 왜곡된 성인지나 성통념이 성범죄의 경계를 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지 왜곡과 성통념을 작동시키고 허용하게 만드는 심리적 원동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늘 갈급해 있는 관심과 애정 등일 것이다(송원영, 2012).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이렇듯 성범죄자에 대한 정죄나 징벌 등, 인과 응보적 대응이 성범죄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애정의 목마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체험이 있을 때, 성범죄자의 변화와 성범죄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성범죄사범을 위한 치료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집단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정기관이나 보호관찰의 경우 대상자가 많기도 하고, 형기 종료 등 일정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집단으로 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성범죄 요인 중 개인마다 다른 특성들을 다루기 어렵고,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룸으로 개인에게 맞는 심도 있는 접근과 치료는 어렵다. 따라서 많은 부분 공통된 요인들은 집단치료를 하면서, 성범죄 피해와 가해 사건, 성중독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개인 상담의 병행이 필요하다. 상담자의 공감이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자와의 개인 상담을 원하는 재범자들이 많았다(윤정숙, 김민영, 이태현, 2020). 개인 상담의 경우 집단에서 개방하기 어려운 재범요인이나 성장 과정 중에 성 피해나 성 가해의 경험, 애정 등 심리적 결핍의 문제를 개인에게 집중해 치료함으로써, 관심과 애정, 공감, 수용 등의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과 개인 치료를 사안에 맞게 적절하게 병행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말한 성범죄 재범자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트라우마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어려서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은 여러 영역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이는 자퇴나 퇴학, 학교 밖 동료들과의 일탈행동 등을 일으킨다. 이런 경험은 어려서부터 불안과 갈등, 반항심과 자기 비난이나 자포자기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게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또래에 대한 육체적, 성적 폭력은 인격적 관계 형성을 배우지 못해, 타인에게 쉽게 공격성을 갖게 하며, 이것이 습관화되고 고착되면 성인이 돼 반사회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부모관계의 회복과 무관심과 방임 속에 홀로 세상 앞에 섰던 외로움과 불안 등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 필요하겠다. 또한, 어려서 겪은 성적 피해로 생긴 트라우마와 이후에 또래를 향해 성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성적 피해의 경우, 성적 가해를 받으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받은 성적 충격, 그리고 가해를 받으면서도 느꼈던 육체적 반응과 쾌감으로 생기는 심리적 갈등과 충격, 이후 쾌감과 돈과 같은 유혹으로 성적 가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용납했던 자신에 대한 자기 비난과 자괴감의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신을 성폭행한 어른에 대한 분노감정의 해소도 필요할 것이다. 어렸을 때의 성적 가해의 경우, 어렸을 때라는 것과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이런 합리화가 성적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기에 여전히 가해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심리적 압박과 중압감이 있다. 이로 인해 성인이 돼서도 성범죄 가해자임을 더욱 부인하고, 성인지 왜곡과 성통념을 더욱 끌어들이고 합리화할 것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 성적 가해 행동 자체에 중점을 두면, 방어기제로 자신을 보호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그 당시에 가해자로서 느꼈던 감정과 정서에 집중하며, 그 감정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인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힘이 생긴다면, 치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넷째, 성중독으로 성욕구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교정에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100시간)과 집중(200시간)과정 프로그램에서는 성중독에 관한 내용은 없고, 심화(300시간)에서도 2회기에 불과하다. 10명 내외의 집단원을 개인 특성에 맞는 성중독 문제를 집단에서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성범죄 재범에 영향을 주는 알코올, 약물, 성중독 중에서 성중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이주경, 2014). 따라서 성범죄 재범자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몸에 밴 성행위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와 성충동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첫 번째 관심과 애정의 필요, 세 번째 성적 트라우마의 해결이 성중독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더불어 개인의 성중독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범죄 재범자에 관한 함의를 제시했지만, 연구 참여자가 적어 이러한 결과를 모든 성범죄 재범자의 체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성범죄 재범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의 재범현상에서 수집한 실증자료에 근거해 이론을 도출하고, 성범죄 재범자의 재범특성이나 과정 등에 관한 이론 형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형성된 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자들에게 적합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재범자들의 추가 재범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고려진/이수정, (2008),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27권 제1호, pp.161~178, 한국심리학회.
- 고려진/이수정, (2009). '시각반응시간(VRT) 측정 방식을 통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성적 기호 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학*, 제3권 제2, pp.3~40, 대한범죄학회.
- 김은혜/이주경, (2014), '중독이 성범죄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2권 제1권, pp.5~30,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김은화/전귀연, (2007), '청소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5권 제7호, pp.71~91, 대한가정학회.
- 김정란/김경신, (2010), '성범죄 가해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4호, pp.381~404, 한국가족관계학회.
- 김종오/유영현, (2007), '연쇄성범죄자의 심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3권 제1호, pp.29~59, 한국범죄심리학회.
- 김재엽/이순호/최지현, (2011), '성인남성의 음란물 접착, 강간통념 수용과 성범죄 가해의 관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8권 pp.65~92,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 김재엽/최지현/이효정/김기현, (2010),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성범죄 가해간 관계 분석-성별에 따른 경로차이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제31권, pp.79~106, 한국아동복지학회.
- 김태곤, (2014), '성범죄자의 성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4권 제2호, pp.48~74, 한국중독범죄학회.
- 법무부 대검찰청, (2019). 2019년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0), 2020년 성범죄백서, 서울: 범죄예방정책국.
- 성완용/임해영, (2019),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 여성 자녀를 둔 부모 체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3권 제1호, pp.97~111,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 송원영, (2012),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17권 제1호, pp.217~227, 한국심리학회.
- 송원영/노일석/신의진, (2013),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효과 검증: 7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32권 제3호, pp.676~679, 한국심리학회.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8), 질적연구방법의 이해(개정판), 서울: 박영사.
- 유재우/송병호, (2009),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강간통념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3호, pp.133~163 한국공안행정학회.
- 윤가현, (2018), 성중독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윤수경, (2015), '성범죄 피해 후유증 경험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6권 제4호, pp.148~169, 한국기독교상담학회.
- 윤정숙/김민영/이태현, (2020),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최이문/류부곤/윤달님/최관/최걸/강태경, (2014),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개발 및 제도화 방안(III):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서울: 형사정책구원.
- 윤정숙/William L. Marshall/Judith Sims-Knight/이수정, (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개발 및 제도화방안(I),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2호, pp.131~141, 한국심리학회.
-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범죄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1호, pp.97~116, 한국심리학회.
- 이수정/위희정, (2015),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pp.403~428,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정덕/장정현, (2011), '성범죄 재범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pp.53~74,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이진석/김재엽/황선익, (2018), '청소년의 성범죄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음란물 접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공격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20권 제1호, pp.187~210,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정민철, (2012),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및 성범죄 재범에 대한 경로모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민철/조영일, (2015),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88~100, 한국콘텐츠학회.
- 최정임/정동훈, (2014), '스마트 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원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445~455, 한국콘텐츠학회.

#### [외국 문헌]

- Abel, G. G., & Becker, J. V. (1985). Use of pornography and erotica by sex offenders. 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Houston, TX.
- Abel, G. G., & Harlow, N. (2001). The stop child molestation book: What ordinary people can do in their everyday lives to save three million children. New York: Xlibris Corporation.
- Barbare, H. E., Marshal, W. L., & McCormick, J. (1998). The development of deviant sexual behaviour among adolesc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The Irish Journal of Psycholgy, 19(1), pp.1~31.

- Bushman, B. J.,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pp.1027~1040.
- Craig, L. A., Browne, K. D., & Stringer, I. (2003a). Risk scale and factors predictive of sexual offence recidivism. *Trauma, Violence & Abuse*, 4(1), pp.45~68.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 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ition)]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
- Gudjonsson, G. H. & Sigurdsson, J. F. (2000). Difference and similarities and between violent offenders and sex offenders. *Child Abuse & Neglect*, 24(3), pp.363~372.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5). The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6), pp.1154~1163.
- Hudson, S. M., Jones, R. S., Marshall, W. L., Wales, D. S., McDonald, E., Backer, L. W. & McLean, A. (1993). Emotional recognition skills of sex offenders. *Annals of Sex Research*, 6(3), pp.199~211.
- Marshall, L. E. & Marshall, W. L. (2006). Sexual Addiction in Incarcerated Sexual Offenders,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13(4), pp.377~390.
- Ryce, J. (1998). Involuntary Civil Commitment for Sexually Violent Predators' Treatment and Care Act. Florida Statute.
- Shanon, E. E., Mathias, C. W., Marsh, D. M., Dougherty, D. M., & Liguori, A. (2007). Teenagers do not always lie: Characteristics and correspondence of telephone and in-person reports of adolescent drug us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0(2~3), pp.288~291.
- Starzyk, K. B., & Marshall, W. L. (2003). Childhood family and personological risk factors for sexual offend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1), pp.93~105.
- Sykes, G. M., & Matza, D. (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6), pp.664~670.
- Wodhams, J. & Labuschagne, G. (2012). South African Serial Rapists: The Offenders, Their Victims, and Their Offenses.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4(6), pp.544~574.

#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



이용주

화신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강사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및 결론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주요 범죄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 범죄 분석과 선행 연구들을 탐색하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약물 중독 등과 결합될 때 일반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잘못된 성장환경과 아동기 학대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런 경험들이 폭력성을 높여주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공중보건 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인 1차 예방,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수사와 공판단계에 해당하는 2차 예방 및 교정과 보호단계인 3차 예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범죄와 재범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이 정신질환 범죄율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공중보건모델, 정신질환, 정신질환 범죄자, 정신건강, 약물 중독

## I. 서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학업 성취와 직장생활을 누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다. 경제성장을 이루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일상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으며, 일자리 부족,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타인과의 경쟁 관계가 지속되고 크고 작은 스트레스 요인들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정신보건법 제1조는 정신장애의 예방과 정신장애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이란 개인 및 사회적 기능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신 이상 상태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라고도 한다. 이상행동은 정상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상과 정상의 판별기준은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적응(adaptation),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적 고통의 수반, 문화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및 통계적 규준으로부터의 일탈이다. DSM-5는 정신장애에 대한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여 진단하고 있다(권석만, 2015). 이와 같은 정신장애 진단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현대사회가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정신질환자도 증가해 왔으며, 그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21년 12월에 두 건의 살인사건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의해 발생하였다. 경찰청(2022)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자 범죄는 8,5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하였다. 재범률도 65.4%로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높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치료받지 못하고 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도 늘어났다. 이에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장강호, 2022).

정신질환 범죄란 정신장애에 기인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신적 고통 혹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소나 교도소 내의 구금치료로 일관해 왔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사전관리보다 사후 처벌에 맞춰져 있어 사전관리와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중보건모델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이란 개인의 정신과 신체적 건강유지를 위해 적합한 생활 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말한다. 공중보건모델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공중보건과 형사사법 발전에 따른 예방모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중보건은 질병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1차 모델, 질병의 조기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되는 2차 예방 및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대한 3차 모델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신질환 범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정신질환 범죄와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강력범죄와 재범 발생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범죄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 등을 참고로 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의 주요 범죄 원인과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 ① 1차 예방: 가정, 지역사회(가정과 지역사회 단계)
- ② 2차 예방: 경찰, 검찰, 법원(수사와 공판 단계)
- ③ 3차 예방: 교정, 보호(교정과 보호 단계)

## II. 이론적 배경

### 1. 정신질환

#### 1) 정신질환의 개념과 정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을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발생하는 장애로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형법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개념으로 심신장애,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정신장애와 관련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Fifth Edition: DSM-5)에서 '정신장애는 개인의 인지, 정서 조절, 행동상의 임상적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으로 개인의 정신적 기능을 뒤틀림하는 심리적, 생물적, 발달적 과정이 손상된 것으로 대개 사회적, 직업적 활동 시 발생하는 중대한 스트레스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정의를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로 한다.

이상행동과 정신질환의 판별기준은 무엇인가?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은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을 말하며, 정신장애(mental disorder)는 특정한 이상행동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상행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측면, 즉 인지, 정서, 동기, 행동, 생리의 측면에서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특성이 포함된다.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현재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포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의나 기준은 없다.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상성과 이상성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4가지로 정의되고 있다(권석만, 2015: 27).

첫째, 적응(adaptation)이다. 적응과정은 개인과 환경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상행동은 개인의 적응을 저해하는 심리적 기능의 손상이다. 즉, 이상행동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신체와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어 원활한 적응에 지장이 초래할 때, 부적응적인 이상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Wakefield, 1999). 하지만 이상행동을 적응적 기능의 손상으로 판단하려는 관점에는 경계가 모호하고, 평가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며, 개인의 부적응이 어떤 심리적 기능에 의해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신장애의 분류체계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들이 현저한 사회적, 직업적 부적응을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라고 판정하고 있다(권석만, 2015: 27-28).

둘째,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적 고통의 수반이다. 이상행동은 개인의 주관적 고통과 불편감으로 부적응적 행동을 되풀이하는 경우다. 개인의 부적응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하게 고통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나 특성은 이상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관적 고통의 기준으로 이상행동을 정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관적 고통과 불편감을 초래하는 정도의 판단이 모호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내면서도 전혀 주관적인 고통과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고통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권석만, 2015: 28-29).

셋째, 문화적 규범(social norm)의 일탈이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문화적 규범이 있으며,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을 나타낼 경우 이상행동으로 규정된다. 문화적 기준 역시 문화적 상대성, 문화적 규범이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DSM-5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상행동으로 평가되더라도 개인이 속한 문화나 집단에서 기대되고 용인되는 행동이라면 이상행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권석만, 2015: 29-31).

넷째, 통계적 규준의 일탈이다. 평균으로부터 멀리 일탈된 특성을 나타낼 경우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 통계적 기준이다. 통계적 기준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라는 통계적 규준에 의해 정상성과 이상성을 평가한다. 즉, 평균으로부터 두 배의 표준편차 이상 일탈된 경우는 이상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적 기준으로 이상행동을 판별하는 한계는 평균으로부터 일탈된 행동 중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탈한 경우, 인간의 모든 행동을 측정하여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통계적 기준은 전문가들이 만든 편의적 경계일 뿐 이론적이거나 경험적인 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DSM-5는 정신지체와 학습장애를 비롯한 일부 정신장애의 경우에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여 진단하고 있다(권석만, 2015: 31-32).

현재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며, 모든 기준마다 장단점이 있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상행동을 판단하게 된다.

## 2) 정신질환의 원인

이상행동과 정신질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발생과정도 복잡하다.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 입장은 대부분 이상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관점과 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신분석적 입장은 이상행동을 개인의 성장 과정과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행동주의적 입장은 환경적 영향에 의한 학습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물학적 입장은 뇌와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 이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인지적 입장은 개인의 역기능적 사고 과정과 신념 체계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입장은 개인이 속한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주장하는 원인적 요인을 통합해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생물심리사회적 입장과 체계 이론적 입장도 있다(권석만, 2015: 3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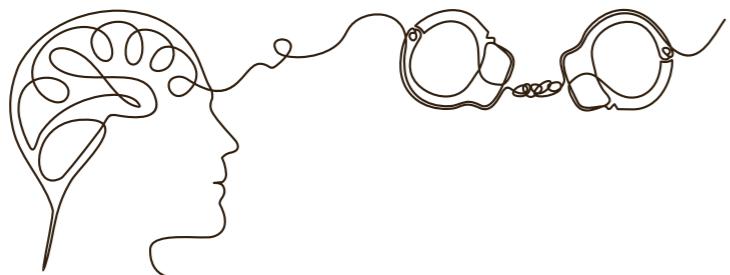
DSM-5는 정신장애를 크게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관련 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및 정신병적 장애, 신체증상장애, 해리장애, 성격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 물질사용 및 중독 장애, 성기능 장애, 신경발달 장애를 비롯한 20가지 범주의 장애로 나누고 있다(권석만, 2015: 119-122).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질환의 원인이 밝혀진 것이 적어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3) 정신질환의 치료와 예방

정신질환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치료 방법은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킴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효과적으로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상행동과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정신분석적 치료는 개인의 무의식적 갈등을 자각하고 자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에서 벗어나게 한다. 행동치료는 학습 원리를 이용하여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거나 적응행동으로 대체하게 한다. 약물치료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뇌의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정신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인지치료는 이상행동을 초래하는 역기능적 사고 과정과 신념 체계의 수정을 통해 치료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은 다양한 정신장애를 완치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치료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치료가 이미 이상행동 즉, 정신질환이 나타난 사람을 정상적인 적응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예방은 정신질환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미리 예방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신질환의 예방은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을 미리 차단하거나 특정한 정신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어 정신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권석만, 2015: 38-39).



## 2. 정신질환과 범죄

의학적으로 정신장애는 정신질환과 정신지체로 나누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경증은 불안의 증세를 중심으로 기질적 병변 없이 외적 원인 또는 심인성 원인에 의해 신경증적 정신기제들이 작용하여 발현되는 것인데 반해, 정신병은 망상, 환각, 기억장애, 퇴행적 행동 등이 있고 사회적 개인적 기능장애가 심하여 사회생활이 곤란한 상태 또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의 정신기능장애라고 할 수 있다(민성길 등, 2023). 형법은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제10조에서 심신장애(심신상실, 심신미약)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형법개정안에서 정신장애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신질환 범죄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와 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2020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은 0.3%에서 0.5% 내외의 경미한 수준이다. 다만, 살인, 폭력, 방화 등의 정신질환 강력범죄자의 비율은 2.2%로 일반인의 강력범죄 1.4%와 비교해 0.8% 높게 나타나고 있다(손지훈 등, 2022: 1). 따라서 정신질환 범죄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정처우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범죄자가 일반 범죄자보다 폭력 행위를 할 가능성과 체포율이 높았다(Brennam, Mednick, & Hodgins, 2000; Bruce, Andrews, & Cullen, 1992; Harris, & Lurigo, 2007). 정신질환 범죄와 관련하여 폭력 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련성 매우 낮았으며, 약물 중독과 결합될 때 폭력 위험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lbogen, & Johnson, 2009).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 특성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Estroff, Swanson, & Lachiotte, 1998).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범죄빈도는 낮으나 치명도는 일반인에 비해 높았으며 (이수정, 2010), 특히 존속살인의 45.8%가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는 자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성국 등, 2009: 93). 정신분열증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리뷰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정신분열증 환자는 일반인보다 폭력 행동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 둘째, 정신분열증이 있으면서 불법적인 약물을 남용하거나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특히 폭력 행동을 할 위험이 높다(McMurran, Khalifa, & Gibbon, 2009).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심신장애,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 정신성적

(精神性的) 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말한다.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정신질환범죄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한 것에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점에서 기존의 사후관리보다 사전 관리의 일환으로 공중보건모델을 개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안성훈 등, 2018: 59).

정신장애와 재범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위험 행동의 발생빈도가 높고 형기 종료 후 사회복귀 후에도 사회적 지지가 없는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범죄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쳐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질환 수용자는 수용기간 중 정신장애 문제로 폭행이나 싸움이 더 많이 발생하고, 상습범 및 재범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 재범의 문제성이 커지고 있다(법무부, 2019). 정신질환과 재범과의 관계에서 조현병, 반사회적 성격장애, 알코올 남용과 폭력 범죄의 재범률에 대한 분석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들은 수용 중 치료는 물론이고 석방 후 지속적인 치료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입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다(법무부, 2019).

### 3. 공중보건모델

#### 1) 공중보건의 개념

공중보건이라 함은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환경위생, 전염병의 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조직화 및 모든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 받도록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한정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만기 출소 후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보건모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형사사법 발전에 따른 Jefferry의 예방모형과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Brantingham과 Faust의 예방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한재경, 2014: 17-23).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예방모델 분류방식을 비판하면서 범죄적 경향성 억제모델, 범행기회 억제모델 및 재범 억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으며(박행렬, 2007), Brantingham & Faust의 공중보건모델을 한국의 형사사법 구조에 따라 적용한 한국형 구조모델을 박병선

(2019)이 제시한 바 있다.

박병선의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한국형 구조모델에 따른 범죄예방 접근방법은 질병 예방에 관한 공중보건모델에서와 같이 크게 3가지 접근단계 및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진성주 등, 2021: 58). 대상 및 영역 측면에서 1차적 예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등 일반사회의 영역에서의 예방을 의미한다. 2차적 예방은 형사 및 보호사건으로 입건되어 범죄인으로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와 피고인을 대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영역에서의 예방을 의미한다. 3차적 예방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교정, 보호 등 사회복귀 영역에서의 예방을 의미한다.

### 4. 정신질환 범죄와 공중보건

#### 1) 형사사법적 대응

정신질환 범죄자는 범죄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 처우대상자이자 정신보건의료의 대상이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은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사회복귀 후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입원 후 강제 치료에 의존하고 있어, 형사사법과 정신보건의료체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적 대응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범죄자는 범행 당시 책임능력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는다. 치료감호로 대표되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은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고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는 치료 명령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은 시설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시설 내 처우로 운용되고 있다. 이들 중 치료감호소 퇴소자나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된다. 형사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안성훈 등, 2018: 2-4).

#### (1)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제도

치료명령제도의 배경은 주취자나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범죄 발생 시,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라는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5년에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주취자와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치료감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범죄인더라도 형사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명령제도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다(안성훈 등, 2018: 3).

## (2) 치료감호법상 치료위탁제도

현행 치료감호법 제23조 1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집행 후 1년이 지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치료감호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위탁제도를 두고 있다(안성훈 등, 2018: 3).

## (3) 치료감호소 종료(가종료)자 사후관리제도

첫째,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자의 경우 시설 내의 적절한 처우를 통해 재범위험이 낮아진 경우에 한해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3년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처분의 집행을 가종료하는 형식으로 퇴소시키고 있다.

둘째, 정신건강서비스 및 외래진료에 대해 현행 치료감호법 제36조 3은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안성훈 등, 2018: 4).

## (4) 보호관찰 종료자 사후관리제도

2019년 4월 17일 정신질환자 중 보호관찰 종료가 되었던 대상자가 진주아파트 살인방화사건을 일으킨 계기로 인하여 개정된 보호관찰법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시행되었다. 보호관찰소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료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 2) 정신보건 의료적 대응

치료감호나 치료 명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는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대응한다. 하지만 치료감호나 치료 명령 대상이 아닌 정신질환 범죄자는 정신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대응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체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해 할 위험이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 등 주

위 사람들이 수인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 치료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료적 조치는 강제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도가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5가지의 입원제도를 두고 있다. 입원의 자발성 유무에 따라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입원을 하기 전 자살타해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등은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래치료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처우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 방지와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해 필요한 의료체계와 보호,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형사정책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의료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의 협력관계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안성훈 등, 2018: 5-6).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에 관하여 형사사법,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의 범죄분석 및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범죄예방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정신질환 범죄자의 폭력성과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범죄백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정책과 정신질환 범죄자의 주요 범죄 원인, 현황 및 특성을 알아봤다.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에 대해 가정, 지역사회 단계에 해당되는 1차 예방,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와 공판 단계에 해당되는 2차 예방 및 교정, 보호단계에 해당되는 3차 예방

에 대해 살펴봤다.

연구 문제들을 바탕으로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탐색하였다. 특히, 문헌 연구방법으로 2010년 이후 정신질환 범죄자와 관련된 논문 및 자료들을 조사하였으며, 경찰청(2022)의 범죄백서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22)과 법무부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2019), 교정통계연보(2022)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 검토했다.

## IV. 연구결과

### 1. 정신질환 범죄자의 범죄 원인, 현황과 특성

#### 1)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인과 특성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해 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같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폭력성이 높은 정신질환의 경우 범죄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 범죄자는 일반인 범죄자보다 폭력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이 약물과 결합했을 때 폭력 행동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살인의 경우 존속살인이 매우 높았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망상과 정신적 착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충동성이 높아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경우 폭력 범죄와 살인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범죄행위의 원인은 충동성, 부모의 무관심한 성장환경, 아동기 학대 경험, 외로움, 공감 무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요인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성격과 범죄 경력이 가장 높은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과 범죄에 대한 상관연구에서도 정신증이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변인들이 재범요인으로 예측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요인에서 일반 범죄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일반 범죄자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치료와 증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본다.

#### 2) 정신질환 범죄자의 범죄유형별 현황

정신질환 범죄자의 범죄 유형 및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범죄를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해 보면, 2010년 형법범죄는 3,854건과 특별 범죄 1,537건으로 총 5,391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범죄 1,921,300건의 0.28%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정신질환자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 정신질환자 범죄 전체는 9,058건으로 전체범죄 1,714,579건의 0.53%로, 2021년 정신질환자 범죄 전체는 9,082건으로 전체범죄 1,531,705건의 0.5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범죄는 2015년 이후 감소해 왔으나, 최근 정신질환 범죄자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표 1> 정신질환 범죄자의 범죄발생 건수

구분	정신질환자 범죄			전체 범죄		
	형법범	특별법범	계	형법범	특별법범	계
2021년	7,751 (85.3)	1,331 (14.7)	9,082 (100.0)	917,787 (59.9)	613,918 (40.1)	1,531,705 (100.0)
2020년	7,763 (85.7)	1,295 (14.3)	9,058 (100.0)	1,044,438 (60.9)	670,141 (39.1)	1,714,579 (100.0)
2019년	6,912 (89.1)	849 (10.9)	7,761 (100.0)	1,041,395 (58.9)	726,289 (41.1)	1,767,684 (100.0)
2018년	6,424 (88.0)	880 (12.0)	7,304 (100.0)	988,398 (56.9)	749,792 (43.1)	1,738,190 (100.0)
2017년	7,840 (86.3)	1,249 (13.7)	9,089 (100.0)	958,865 (52.5)	866,011 (47.5)	1,824,876 (100.0)
2016년	7,072 (84.8)	1,271 (15.2)	8,343 (100.0)	1,005,689 (50.1)	1,002,601 (49.9)	2,008,290 (100.0)
2015년	5,952 (84.8)	1,064 (15.2)	7,016 (100.0)	1,047,761 (51.9)	972,970 (48.1)	2,020,731 (100.0)
2010년	3,854 (71.5)	1,537 (28.5)	5,391 (100.0)	943,585 (49.1)	977,715 (50.9)	1,921,300 (100.0)

※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2022)

형법범죄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정(변경, 신설 등)된 법령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2 범죄분석의 형법범죄는 중분류(8개), 소분류(48개), 세분류(101개)로 분류하였다. 형법범죄의 중분류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로 구분된다.

<표 2> 주요 죄명별 정신장애범죄 구분

범죄 구분	해당 범죄 목록
재산범죄	절도/장물/사기/횡령/배임/손괴
강력범죄(흉악)	살인/강도/방화/성폭력
강력범죄(폭력)	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와 유인/체포와 감금/폭력행위 등 (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
위조범죄	통화/유가증권, 인지우표/문서/인장
공무원범죄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풍속범죄	도박과 복표/신앙/기타 음란행위
과실범죄	과실치사상/업무상 과실치사상/실화
기타 형법범죄	명예/권리행사방해/신용업무경매/주거침입/비밀침해/유기/교통방해/공무방해/ 도주와 범인은닉/위증과 증거인멸/무고/공안을 해하는 죄/내란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기타

※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2022)

### 3)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현황 및 실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범죄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가장 많은 정신질환은 양극성정동장애이며 그 뒤를 이어 비기질적 수면장애, 기타기분장애, 조현병, 물질관련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신질환수용자 병명별 현황(2021년)

구분	치매 등	물질 관련 장애	F20-29 (조현병, 기타)	F30-39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F40-48 (기타 기분장애)	F50-50 (비기질적 수면장애, 기타)	성격 장애	지능 장애	발달 장애	ADHD, 틱 등	기타	단위: 명
												2021년
												72
												181
												568
												1,647
												772
												1,301
												51
												15
												4
												32
												226

※ 출처: 교정통계연보(법무부, 2022)

교정시설의 경우 원격의료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 진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협력 의료시설 간 최첨단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 가지 않고도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의료시설 진료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 및 예산(2012~2021년)

구분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	진료 건수 증감률 (`12년 기준)	계	예산 부담	수용자 부담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2021년	39,176	149%	26,852	23,768 (88.5%)	3,084 (11.5%)
2020년	37,101	141%	28,501	25,654 (90.9%)	2,847 (10.0%)
2019년	39,824	151%	25,460	22,421 (88.1%)	3,039 (11.9%)
2018년	40,578	154%	24,599	21,834 (88.8%)	2,765 (11.2%)
2017년	37,403	142%	22,815	20,403 (89.4%)	2,412 (10.6%)
2016년	34,709	132%	18,796	16,532 (88.0%)	2,264 (12.0%)
2015년	32,231	122%	17,421	15,568 (89.4%)	1,853 (10.6%)
2014년	30,302	115%	12,339	10,661 (86.4%)	1,678 (13.6%)
2013년	27,363	104%	14,318	12,362 (86.3%)	1,956 (13.7%)
2012년	26,333	100%	15,277	13,926 (91.2%)	1,351 (8.8%)

※ 출처: 교정통계연보(법무부, 2022)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 살인, 방화 관련 범죄자 중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에서 정신장애 의심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외부 병원 입원 또는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 및 투약 처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55개의 교정시설(민영교도소 제외) 중 일부 교정시설은 심리치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정본부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의 지역 정신건강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살펴본 결과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하다. 특히 치료감호소의 경우 기관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신질환 범죄자를 취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매우 부족하며 과밀수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정신질환의 장애 유형이나 임상적 심각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차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약 조치 이외의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활을 위한 심리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교정청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만기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관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범죄 행동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거의 유사하며 범죄 감소와 공공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범죄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어야 하고 따라서 공중보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주소연 등, 2020: 40; Caruso, 2017: 2). 이에 공중보건모델을 활용한 한국형 구조모델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1차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

#### (1) 범죄 취약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강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살인사건과 2019년 4월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정신질환 범죄는 그가 속한 지역 공동체(Community)에 막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함께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

라서 자의에 의한 치료 노력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에 의한 비자의적 치료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인권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비자의적 강제치료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범행의 늪에 빠지는 상황이 재현되곤 한다. ‘탈수용화(Deinstitutionalization)’가 진행됨에 따라 정신병동의 수용자 수 감소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거나 혹은 더 이상 입원이 안 될 경우 범죄를 통해 교도소로 이동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팬로즈 가설(Penrose hypothesis)은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되었다(이만우, 2019: 7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위험군 정신질환자들을 빠짐없이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들도 병원에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치료명령제(CTO, Community Treatment Order)를 실시하고 있다. CTO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정기적인 연락 유지 속에 약물치료 이행을 개선하며, 환자들도 자신들의 치료에 더 관여함으로써 재발을 더 쉽게 감지하게 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와 병행하는 지역사회치료명령제를 도입한다면 보다 저항없이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가 모두 원-원(Win-win) 하는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및 인식 개선

조현병 환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시기는 대부분 발병 후 첫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고, 치료 이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 이상 감소한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다(노충래 등, 2019:173; 안성훈 등, 2018: 196).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한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모친은 아들이 구속된 당시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소연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비를 계속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 할 때, 범죄는 발생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라고 본다. 그러한 사례는 매스컴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정신질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범행이 일어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개입이다. 현재 기초수급자 등은 국가 부담으로 진료하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등에서는 치료비 등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부담 대상의 폭을 넓혀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행을 오롯이 행위자만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사회와 국가적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의 형법학자인 리스트(Franz von Liszt)가 주장한 “좋은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다”라는 말과 다

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범죄에 대한 누락 없고, 중복 없는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 Exhaustive)한 최상의 예방정책은 이들에 대한 최상의 사회복지 정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정신질환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을 줄이는 것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2) 2차 예방: 수사와 공판 단계

### (1) 치료명령제도 및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이 추진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과 격리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즉,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정신보건 제도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인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2016년 5월 17일 정신질환자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직전인 2015년 12월 1일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고 이후 1년이 경과된 후 시행된 치료명령제도는 정신질환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통원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전환제도(Diversion)의 일종이다.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해야 하며 이때 보호관찰 기간은 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으로 하되, 치료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후 2016년 5월 29일에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하고, 입원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시행함으로써 ‘탈수용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탈수용화’ 정책이 충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자 본인은 물론 나아가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스템 적응 실패에 따라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른 강제적 보호처분(실형, 치료감호, 치료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결과(범행)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신질환 범죄자는 지역사회 보건 시스템과 형사사법 시스템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 또는 크리밍(Creaming) 현상의 원인이 되어 버렸다. 정신질환 범죄자(살인 등 중범죄자 제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치료명령제도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보호(보호관찰) 아래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받고 재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치료명령제도의 효과성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성

과분석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법무부, 2018: 47). 물론 여기서는 보호관찰제도,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등에 대한 보완 및 강화방안은 별론으로 한다. 이와 함께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래치료지원제도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을 위해서도, 나아가 전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치료 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이인영, 2022: 95-96).

### (2) 문제해결법정(Problem-solving courts)으로서

#### ‘정신건강법원(Mental health courts)’ 설립

우리의 치료감호제도는 일반 형사법원이 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원을 구성하는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다. 미국은 일반형 사절차와 별개의 절차로서 문제해결법원인 약물법원(drug courts)이나 정신건강법원(mental health courts)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신건강법정은 비용이 무료이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기관과 전문요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치료계획이 대상에 맞게 개별화되어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노충래 등, 2019:165; 조현욱, 2022: 206-207). 정신건강법원이 운영된다면 현행 피치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에서 피치료자의 치료 거부와 치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일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정신건강법원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법원의 조직, 비용의 부담 등과 같은 선결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전담재판부를 신설하여 형사재판의 한 유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김병수, 2019: 13). 정신질환 범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이나 전과의 악순환이 이뤄지는 순환구조를 하루속히 균절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도입이 요구된다고 본다.



### 3) 3차 예방: 교정과 보호 단계

#### (1) 정신질환 수용자 권리 향상을 위한 진료 환경 및 진료 접근권 향상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은 일상 활동의 기능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역 사회에 있건, 교정시설에 있건 정신건강의학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정시설에서는 이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요구되는 치료 거실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상행동이 발현될 경우 보호실 또는 진정실을 이들의 중환자실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시설은 격리를 위한 시설로서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약물치료, 심리치료, 환경치료 등이 집중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적 입원 병실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용 수용 거실의 확대 운영은 필요하다(주소연 등, 2020: 53-54). 이는 교정당국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법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정신질환 수용자와 관련된 보호장비 사용 및 보호실, 진정실 수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여 보다 인권적,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특히 보호실, 진정실 수용시간은 적정한지, 보호장비에 의한 강박의 정도는 규정되어 있는지, 보호장비 사용과 보호·진정실 수용에 있어 의료인 등 전문가의 개입과 절차는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 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에 의해 격리와 강박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보건복지부, 2023: 371-374). 정신질환 범죄인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처우대상이자 정신보건의료의 처우대상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건 사회 내 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건 진료적 처우는 유사해야 할 것이다.

<표 5> 격리·강박 시행 시간 기준

구분	성인(19세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격리·강박지침, p.373.

또한, 정신질환 수용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진료 기회가 부족하여 적정한 정신건강·의학적 진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일선 의료행정은 물론 수용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우선적 해결방안으로 현행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원격진료센터를 각 지방교정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면 정신질환 수용자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행정의 어려움을 많은 부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하고, 직급은 고위공무원급으로 하는 한편, 고등법원이 위치한 대도시 지역 교정시설에 상주토록 하면서 그곳 소속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까지 맡긴다면 수용자의 접근권 보장과 함께 교정시설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윤정숙 등, 2020: 122-123).

#### (2) 정신질환 수용자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 운영

정신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일탈 및 범행 없이 병존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하는 정신질환 수용자가 문제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한 보호수용 및 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주장한다(이수정 등, 2022: 105; 손지훈 등, 2022: 218). 정신질환의 치료는 당사자의 인권 문제를 떠나 자발적인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전과자라는 낙인도 달갑지 않은 그들에게 법무부 산하 기관에 수용 등 관리된다는 자체에 또 다른 낙인의식에 사로잡혀 거부감이 우선할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출소 전 단계에서 치료에 동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들을 재활토록 하는 한편, 직업교육, 원호제공 등 사회적 재활을 함께 제공하는 출소 전 중간교정시설의 운영, 즉 중간처우가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에 가석방제도까지 결부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동의 아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에 치료적 처우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 및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커뮤니티 케어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이 고립되는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범죄에 있어서 많은 변화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신질환 범죄가 2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일반 범죄와 함께 정신질환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청 범죄 통계, 검찰청 범죄 분석 등을 참고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주요 범죄 원인과 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만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드물며, 약물 중독과 결합되었을 때 폭력적 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과 폭력 행위를 예측하는 요인 분석에서 정신질환과 범죄 관련성은 매우 낮았으나, 약물 중독과 결합될 때 폭력의 위험 요소가 높아졌다(Elbogen, & Johnson, 2009)는 연구와 정신분열증이 있으면서 불법적인 약물을 남용하거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폭력 행동이 높았다(McMurran, Khalifa, & Gibbon, 2009)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범죄 행위는 충동성,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 아동기 학대 경험에 있거나 공감 무능력과 같은 것을 원인과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치료와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약물 중독이 아닌 경우 범죄와 연관성은 매우 낮으므로 현재 법무부가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1차 예방은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이다. 이 단계는 범죄 취약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 사회에 의한 비자의적 치료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치료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신질환 범죄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 환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시기는 대부분 발병 초기에 발생하고 있어(안성훈 등, 2018: 196),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가 미연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예방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와 공판 단계이다. 먼저 치료명령제도와 외래치료 지원제도의 활성화다. 미국은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이 추진되어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과 격리보다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강

조되고 있다. 즉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이 정신보건제도의 핵심이 되었다. 우리나라로 현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로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치료명령제도의 효과성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성과분석에서 이미 입증되었다(법무부, 2018: 47). 또한 문제해결법정으로서의 정신건강병원 설립의 필요성이다. 미국은 일반형사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문제해결원인 약물법원이나 정신건강법원을 통해 대상자에게 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노총래 등, 2019: 165), 정신건강법정 비용을 무료로 하고 있다.

3차 예방은 교정과 보호 단계이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진료 환경과 진료 접근권 향상이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정시설은 격리를 위한 시설로 중증 정신질환자이 약물치료, 심리치료, 환경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받을 정신건강의학적 입원 병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용 수용 거실의 확대 운용이 필요하다(주소연 등, 2020: 53-54)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수용자에 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진료 기회가 부족하여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일선 의료행정은 물론 수용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격진료센터를 지방교정청에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시설 운영의 중요성이다. 이들은 정신질환 전파자라는 낙인과 함께 법무부 산하 기관에 수용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소 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내 별도의 수용시설보다는 형기 내 충분한 재활과 사회복귀 훈련을 위해 가석방제도 결부된 중간교도소 성격의 중간처우 시설 운영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 범죄자의 주요 범죄 원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일반인 범죄를 보다 현저히 낮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약물 중독이 되었을 경우 폭력 행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이나 아동기 학대 경험 등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신질환으로 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예방은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범죄 취약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과 커뮤니티 케어 강화가 1단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자의에 의한 치료와 지역사회에 의한 비자의적 치료 노력을

통한 범죄예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연에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범죄 발생 후 법무부 산하 수용기관에서 수용하면서 진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사후 대책으로 범죄를 줄이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리나라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치료명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정신질환 범죄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기초수급자에게만 인정되는 진료비 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범죄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음으로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2차 예방은 경찰,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공판 단계로, 먼저 치료명령제도와 외래진료지원제도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교정당국이 제공하는 시설에 수용하고 격리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현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인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할 충분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이 부족한 상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질환 범죄자는 지역사회보건시스템과 형사사법시스템의 뜨거운 감자 또는 크리밍 현상의 원인이 되어버렸다.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를 정신질환 범죄자를 제외한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치료명령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받고 재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그 성과분석이 입증된 만큼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법정으로서의 정신건강법원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제도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일반 형사법원이 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원을 구성하는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 일반형사절차와 별개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문제해결법원인 약물법원이나 정신건강법원을 통해 대상자에게 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신건강법원이 운영된다면 피치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료 거부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차 예방은 교정과 보호 단계로 먼저 정신질환 수용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진료 환경 조성과 진료 접근권 향상이다.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위한 별도의 치료 거실 운용이 미흡하다.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용 수용 거실의 확대 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 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에 의해 격리와 강박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시설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들이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일탈과 범죄 없이 함께 살아가느냐이다. 이들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또다시 법무부 산하 기관에 수용관리 된다는 것에 많은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출소 전 단계에서 동의하에 적극적으로 재활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직업교육, 원호제공 등 사회적 재활을 함께 제공하는 출소 전 중간교정 시설의 운영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주요 범죄 원인과 특성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제안내용은 정신질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아직 교정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아직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좀 더 시설과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연구자가 교정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 &lt;참고 문헌&gt;

## [국내 문헌]

- 경찰청, (2022),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권석만, (2015),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병수, (2019), 한국형 치료명령 모델의 개발, 법학연구, 60(1), pp.195~217.
- 노충래/권수진/전종설, (2019), 외국의 정신질환범죄자관리 및 의료복지체계, 법무부/이화여자대학교.
- 민성길/김찬영, (2023),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박병선, (2019), 고령사회 노인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한국형 구조모델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행렬, (2007), 범죄학에 따른 범죄예방모델 분류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과학수사학회, 1(1), pp.56~70.
- 법무부, (2018), 치료명령제도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9), 정신질환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22), 범죄분석, <http://www.spo.go.kr>
- 법무부, (2022), 교정통계연보, <http://www.spo.go.kr>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http://www.mohw.go.kr>
- 손지훈/김성남/안성훈/안성희/이해우/조성주/조은경, (2022), 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병원.
- 안성훈/정진경, (2018),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http://www.kicj.re.kr>
- 이만우, (2019),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이수정, (2010), 최신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수정/김경옥, (2016),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서울: 중앙일보
- 이수정/신나영, (2022), 재범 고위험군[성범죄, 중독범죄[알콜, 마약 등], 정신질환범죄]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대학교.
- 이순례/박철현/김상원 역, (2011), 범죄예방론, 서울: 그린.
- 이인영, (2022),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흉의법학*, 23(1).
- 임준태, (2009), 범죄예방론, 서울: 대영문화사.
- 장강호, (2022), 정신질환자 범죄 1년 새 27% 급증, <http://www.hankyung.com>

- 정성국/이효정/임형수/강현욱, (2009), 살인사건 중 존속실해와 정신분열의 연관성 분석, *한국법과학지*, 10, pp.88~94.
- 주소연/박병선, (2020),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 영국의 정신질환 범죄인 관리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교정상담학연구*, 5(2), pp.33~67.
- 조현욱, (2022), 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안전문학연구*, 19, pp.199~211.
- 진성주/박병선, (2021),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소년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고찰, *교정상담학연구*, 6(3), pp.51~82.
- 윤정숙/최지선, (2020),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및 외국 입법례,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재경, (201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외 문헌]

- Bruce G. L., Andrews H., & Cullen F. T., (1992), The violent and illegal behavior of mental patients reconside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3), pp.275~292.
- Brennan, P. A., Mednick, S. A., & Hodgins, S., (2000), Major mental disorders and criminal violence in a Danish birth coh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5), pp.494~500.
- Gregg D. Caruso, (2017),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Criminal Behavior*. UK: ResearchersLinks Books.
- Elbogen, E. B., & Johnson, S. C., (2009), The intricate link between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6(2), pp.152~161.
- Estroff, S. E., Swanson, J. W., & Lachiotte, W., (1998), Risk reconsidered: targets of violence in the social networks of people with serious psychiatric disorde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3, pp.95~101.
- Harris, A., & Lurigio, A. J., (2007), Mental illness and violence: a brief review of research and assessment strateg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pp.542~551.
- McMurran, M., Khalifa, N., & Gibbon, S., (2009), *Forensic Mental Health*. Cullompton, Devon: Willan.
- Wakefield, J. C., (1999), Evolutionary versus prototype analyses of the concept of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pp.374~399.

# 괴물을 다루기 위하여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학대

수도권 어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 필자는 위 기사를 보고 크게 놀라지 않았음을 고백해야겠다. 사건이 경미해서가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워낙 많은 교정기관 사례를 이미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는 민망해 차마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도 꽤 있다. 물론 형사 법 학자로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이전에 교호신문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사회의 한 일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들이 교도소 담장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모양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그와 동시에 엄청난 명성과 악명을 떨친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Phillip G. Zimbardo)는 역사에 길이 기록될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한 바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야심 찬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실험 결과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험 결과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가상의 교도소에서 임의의 방식으로 교도관과 재소자의 역할로 나뉘었고 그 역할을 연기했다. 처음에는 모든 참여자가 역할을 받기 이전처럼 화기애애하게 지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자들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생겨났다. 교도관(역할을 맡은 참여자)은 재소자에게 각종 규칙을 강요했고 재소자(역할을 맡은 참여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 재소자들은 처음엔 이에 반발했지만 차츰 교도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정말로 죄를 지어 감옥에 온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몇 명은 심지어 보석금을 내고 나가겠다거나, 변호사를 불러 달라는 요구했다. 급기야 교도관이 재소자를 고문, 학대하기에 이르자 실험은 예정된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됐다.

필립 짐바르도의 시대(1970년대)에서는 교도관과 재소자가 각각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약속이었던 듯싶다. 참여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만약 현대 한국에서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을 재현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재소자 역할을 맡은 사람 중에 적어도 일부는 마치 자신이 악성 재소자인 것처럼 '연기'해 교도관의 권위에 불복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학대를 받는 것은 교도관을 '연기'하는 사람 이 될지도 모른다.

## 조명해야 할 교도관 학대 문제

현재 한국에서는 교정기관에 요구되는 고전적 역할과 의무(재소자의 인권 존중)가 큰 문제 없이 달성된 듯하다. 과밀화라는 고질적 문제는 있지만 이는 예산 부족과 협오시설 회피라는 정치적 갈등이 주원인이지 재소자를 괴롭히려 과밀화를 조장한 결과는 아니다. 적어도 교도관이 재소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이념은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는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학대가 아닌 재소자에 의한 교도관 학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떠오르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됐다. 꽤 오래전부터 이미 이 문제가 실무와 학계에서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와 사회, 문화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동안 교정의 물리적 요소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그 안을 구성하는 교도관과 재소자의 인식만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종전의 이념과 상반되는 이념을 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재소자가 교도관을 학대하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을 그 누가 알았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도관을 괴롭히는 문제적 재소자가 아직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여전히 모범수가 되고자 노력하는 재소자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별문제 없이 교정기관 규율을 따르는 재소자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한두 명의 '괴물'은 마치 고급 사과 상자에 심어진 한 개의 썩은 사과가 돼, 언제 주변의 사과들까지 오염시킬지 모른다.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있을 때 사과 상자를 며칠만 방치하면 상자의 사과는 전부 썩어버리고 만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교정기관의 '괴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일단 이 논의를 용기 있게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놀랍게도 이 괴물들을 다루려는 구체적인 논의는 물론이고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 국가의 공직자가 재소자에게 험한 꼴을 당한다는 사실이 퍼지면 교정기관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절차 전부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일단 문제를 제기하면 적당한 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봉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일까? '교정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이 '교정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지배해 버린 것은 아닐까? 교정활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기가 꺼려져서일까?

아마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만큼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괴물을 물리치는 첫 번째 걸음은 '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누구나 괴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을 어떻게 다룰지 과감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괴물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괴물의 이름이 불리지 아니하게 하여 마치 괴물이 없는 것처럼 속이기에는 때가 늦었다.

# 형사 전자소송에 따른 교정기관의 쟁점과 과제



이세린

안양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감

## I. 들어가는 말

## II.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이해와 교정기관

## III.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 IV. 형사 전자소송에 따른 교정기관 과제

## V. 맺는말

## I. 들어가는 말

민사소송의 전자화는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의 제정과 함께 2011년부터 시행됐다. 형사소송의 전자화 역시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으로 제정됐으나,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관리 및 관리주체, 통합시스템의 필요 등에 의해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2021년 10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기관에서도 형사 전자소송의 전면적 시행으로 인해 논의해야 하는 점들과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1조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전자화법」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실현하고, 형사사법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권인 실장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형사절차전자화법 제1조).

형사절차는 수사, 재판, 형의 집행에까지 이르는 여러 기관의 연계적 업무로 진행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형사절차전자문서법 등의 입법을 통한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은 각 기관의 형사사법 정보의 공유와 형사 전자문서 활용의 기반 위에서 수사부터 소송을 거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의 형사사법 정보 공유와 형사 전자문서의 활용을 통한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은 정보의 공유 속에서의 남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의 적정관리 및 형사 전자소송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실질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에 있어서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의 정보 공유, 정보의 보안과,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 전자화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이해하고 외국의 형사소송을 비교해 교정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4월 10일에 발행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기초로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에 있어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수용자가 형사 전자소송을 통해 그 목적에 따른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논의해야 할 부분과 교정기관의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이해와 교정기관

### 1. 형사사법 전자정보

형사 전자소송을 살펴봄에 앞서, 우선 향후 형사 전자소송으로 공유되는 ‘형사사법 전자정보’가 무엇인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전자정보’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전자적으로 제출, 작성, 관리되는 정보이며, 넓은 의미로 확장된 정보개념에는 접근, 전달, 유통 자체정보를 포함해 온라인 법정, 디지털 법정에서 생산 관리되는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 전자정보에 대해 「형사절차전자화법」에서는 수사절차, 공판절차와 재판 집행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는 ‘형사사법정보’에 대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처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3호), 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해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와 불가분 결합해 유통되고, 관리되는 정보로 본다(동조 제4호).

### 2.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 가.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구분

‘민사전자문서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돼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보고 있으나(제2조 제1호),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는 정보는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문서는 전자화문서로 정의해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제2호)<sup>1)</sup>. 이처럼 민사 전자소송에서와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정보로 변환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전자소송에서 위와 같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구분하는 실익은 전자화문

서의 대상인 전자화대상문서의 증거능력에 있어서 그 실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화대상문서가 원본으로서의 증거능력을 가지는 경우, 이를 전자로 변환한 정보에 증거능력의 부여 등의 문제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구분은 증거조사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292조에서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제1항 및 제2항), 요지 고지(제3항), 또는 열람(제5항)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증거물은 제시(동법 제292조의2)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 요지 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나. 특별법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 ①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증거조사와 문제점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련해 특별법(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4조<sup>2)</sup>)에 해당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18조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증거방식을 별도로 규정해 열람 및 재생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조항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sup>3)</sup>의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에 따라 여전히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원본의 보관자 및 보관기간 등은 추후 문제 될 여지가 있다.

##### ②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은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요건이다. 이를 위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동일성’ 유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

②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3)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 ③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과 문제점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해 위 법문으로는 그 주체와 기간을 알기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약식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절차전자문서법과 관련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전자화문서 작성 후 약 1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사자에 대해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만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이러한 법률을 고려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가 원본 증거이거나 합의서 등 중요한 양형 자료일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기록 보관기간에 준해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20조에서는 전자문서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자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만을 규정했으므로 동규정을 '전자화문서'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를 마련하거나 '전자화문서'에 대한 폐기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④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전자서명과 교정기관에서의 쟁점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8조 제1항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출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으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정보의 작성, 보관, 유통에 대한 규정이므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의 전자문서 제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교정기관에서는 전자서명에 관해 수용 중인 자가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다. 수용자는 문서를 제출할 때 ① 본인이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② 교정기관 등 법원 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한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특히,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자의 경우라면 ②이 문제 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8조 제1항<sup>4)</sup>과 관련해 제출하려는 자를 '수용자'로 볼 것인지 '교정기관'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는 전자서명의 주체에 대한 문제이며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 별도의 전자서명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고 교정기관은 필수적으로 사용자등록을 하게 되므로 서면을 제출받은 교정기관이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려면 전자로 제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전자서명의 주체는 교정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용자가 형사재판 중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부분은 반성문이므로 이때 해당 전자화대상문서의 제출 주체는 해당 수용자임에도 전자화문서의 제출 주체는 교정기관이므로 수용자가 우편으로 직접 제출하는 절차에 비해 주체의 동일성이 문제 되며, 불필요한 절차(법원에 우편으로 직접 제출되는 것에 비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교정기관을 별도로 거치게 됨)가 강제가 될 우려가 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1조에서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 제1항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제1호)',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제출 주체에 따른 전자서명과 관련해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제1호)라 볼 수 없을 것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전자서명 주체의 문제와 관련돼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추후 대통령령과 대법원 규칙의 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정기관에서라도 별도의 법령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제8조(전자서명)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야 한다.

## 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개별 형사정보 시스템의 운영

형사사법업무는 수사, 재판, 형의 집행까지 연결된 업무이므로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해서는 각 처리기관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모든 기관을 통합하는 형사정보 시스템이 아닌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고유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생성한 형사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개별 형사정보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해 각 기관의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사정보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며, 국가의 처벌이라는 강제성의 문제와 관련해 그 정보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만 관리된다면 이는 ‘빅브라더스’의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과 사회체계를 뜻하는 ‘빅브라더스’에 대한 우려는 2010년 형사절차전자화법의 제정에도 2021년에 이르러서야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제정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형사 전자소송은 단순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형사정보 독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처리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6조<sup>5)</sup> 제1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각 처리기관의 협력의무를 부과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소송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종이 기록의 한계를 극복한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진행”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소송관계인의 기본권 보호강화를 힘쓰며, 협력을 통해 투명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이러한 각 기관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는 조치 또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⑥ 전자소송 동의와 교정기관에서의 생활

### i ) 전자소송 동의 효력 기간의 문제

전자소송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동의의 효력이 언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민사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사절차전자문서법」에는 이러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 내용에 대한 관계 법령 또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형사사건의 진행 중 전자소송 동의는 수사기관에서 동의, 재판 중 동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재판은 일반적으로 3심제이므로 전심에서 동의한 경우 판결 확정 시까지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교정시설과 관련해 전자소송 동의 후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의 전자소송 동의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7조에서 사용자등록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효력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대한 사용자등록을 의무화해 법률의 적용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수사부터 형의 집행까지’를 일련의 과정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의자·피고인도 1회의 사용자등록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전자소송에 따라 진행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

또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제6조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각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절차 중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 사용자등록을 연계된 모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의 전자소송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조 제2항의 협력의무로의 부과에 따른 연동 시스템의 개발, 형사정보의 유통망(통합형사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ii ) 철회의 구체적 예시 규정과 전자제출 예외사유 규정의 필요성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sup>6)</sup>은 철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철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나마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형사 전자소송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는 사유로 철회를 해야 하는 경우

5)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6) 제7조(사용자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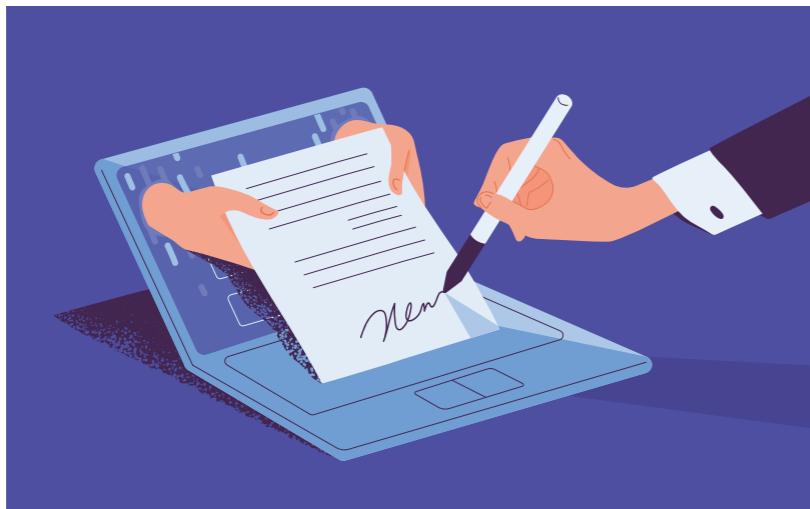
등을 고려해 이러한 사유로 인한 철회를 규정하는 경우, 일시적 원인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전자기록 및 전자화기록의 제출의 예외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등록의 철회에 대한 구체적 위임 또는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일시적 전자제출의 예외사유를 규정해야 한다.

### iii) 교정기관과 관련해 구금 중인 자의 선택권 보장의 필요성

구금된 수용자의 경우, 전자소송에 동의했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자서명의 가능성 및 전자서명의 주체와 전자화대상문서의 주체가 동일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적 제출의 의무를 면제해 전자문서 제출과 종이문서 제출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제출을 강제할 경우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는 필수적으로 전자적 제출해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특칙에 따라 상소장 등을 전자적 제출해야 하나, 이는 수용 중인 자에 대한 전자기기의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 특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소송에 사용자등록을 했더라도 수감 중인 경우라면, 형사업무처리기관에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사용자등록을 한 자의 문서 제출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 III.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 1.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 가.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의 내용

독일은 16개의 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지만 독일 전역에 단일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며, 2005년 3월 22일 「사법 부문의 전자적 의사소통방법 이용에 관한 법률(사법의 사소통법)」을 제정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서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신설했고(제41a), 위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독일의 「사법의사소통법」은 기록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됐으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기록의 완전한 전자적 작성의 도입은 아니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일부에 ‘전자적인 처리 가능성’이 마련됐던 것일 뿐, 형사소송에 있어서 절차관계인이 전자적으로 기록을 볼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지 않았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동법 제1조21호에서 전자적 작성 기록의 근거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a조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사기록은 여전히 종이기록의 형태로 작성됐으므로, 위 조문의 신설로 인해 독일에 전자소송이 도입됐다고 볼 수 없다.

이후, 독일은 2017년 7월 5일 「사법 부문의 전자기록 도입 관련 전자적 법적교류 개선에 관한 법률(전자기록 도입 법률)」을 제정해 2018년 1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형사 전자소송이 실시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형사 전자소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종이기록도 일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위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3조 제6항). 「전자기록 도입 법률」은 제1조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으면, 제2조에서 전자적인 기록 작성을 필수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했다. 그러나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 국민은 전자소송에 참여할 의무가 없고, 기록 열람을 위해 반드시 기술적 설비를 마련할 필요도 없도록 했다.

위 전자기록 도입 법률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2a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항에서는 ‘전자문서는 관청 또는 법원의 수신을 위해 정해진 설비에 저장되는 즉시 도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전자문서가 관청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정을 도달의 효력이 없다는 점 및 유효한 기술적 기본 조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발송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발송인이 지체 없이 관청 또는 법원의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추가 제출하고 이것이 먼저 제출한 문서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는 먼저 제출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 나.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과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 -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렇게 독일은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에의 전자문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독일의 규정은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재판에 있어 재판 진행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부분에 그 의의 두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독일 또한 수감시설에 기소장 등본 송부 등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전자소송의 주체, 업무기관을 ‘형사소추기관(검찰)’과 ‘법원’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2조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라고 규정해 형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기관까지 전자소송의 기관으로 명시해 전자제출의 의무를 교정기관까지 확대했다.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 및 국민권익 신장적 측면에서의 형사 전자소송 대상 기관의 확대는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교정기관까지의 전자송달 및 전자제출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전자소송의 주체를 형사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에 해당하는 ‘형사소추기관’과 ‘법원’으로 규정하고 기타 송달에 관해 교도소 등 수감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 당사자의 전자적 형사소송에의 참여를 중점적으로 입법화한 독일의 「전자기록 도입 법률」과 「형사소송법」은 그 의미가 있다.

## 2.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

### 가.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의 내용

미국은 연방과 50개 주의 사법제도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이며, 연방과 각 주가 각각의 실체법과 형사절차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나, 그 내용을 법령에 의해 조서로 작성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수사 과정에서는 증인이나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시스템이 논의된다.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9조는 전자적 송달 및 전자적 문서 제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 a항 제3호 a목은 법원의 전자적 제출시스템을 이용한 송달에 관해, b목은 그 외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송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규정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을 송달하는 당사자(발송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해, 송달하는 당사자(발송자)는 송달에 있어서 송달 통지에만 의무를 부과

한 것이 아닌 송달의 완료를 확인하도록 해서 실제 송달의 확인 의무까지 부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소송 이용자의 범위에 대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변호사에게만 전자 접수를 허용했지만,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은 피의자도 근거규칙에 따라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소송 이용자의 범위가 획일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법원은 변호사용 시스템과 비변호사용 시스템의 구분해 운영하고 있어, 각 사용자에 따라 사용하기 적절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종이서류의 스캔을 통한 전자제출 등과 관련해 스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독성 문제는 제출자가 책임져야 하고, 만약 스캔문서를 읽을 수 없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며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은 문서 제출자에게 종이 원본 보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즉, 미국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단순히 형사절차의 진행을 전자로 진행하는 것만이 아닌 절차에 있어 예외적 사항에 해당하는 본연적인 서류의 제출에 대해 그 예외적 사항에 대한 해석 및 원본 자료의 보관 주체를 분명히 해서 증거의 보존을 충실히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전자접수통지 시스템에 의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변호사에게만 하고 본인에게는 하지 않으며, 형사 판결의 이유서 부분은 전자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 법원사무원이 이유서의 종이사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의 특징상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안이 중요하므로 확인 가능한 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면 죽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에게만 통지해 변호사가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문이 아닌 이유서에는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며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재되므로 보안의 문제가 항상 문제 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아닌 종이사본의 송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 연방법원의 통지 및 송달에 대해 일종 형사 전자소송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전자소송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사정보의 보안과 인권보호라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있으며, 변호사가 선임된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적절한 임무 수행의 책임에 비춰 통지·송달된 전자문서를 의뢰인(피의자, 피고인 등)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자소송의 실현에 방해가 되거나 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미국의 국립 주법원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전자소송 도입에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불충분한 자금과 인력이라고 지적됐으므로, 이는 단순히 미국만이 아닌 형사 전자소송을 운영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과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미국의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관이 조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많으며, 연방과 주가 각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형사 소송 절차를 그대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소송은 시스템의 개발이 중요하며(법원과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한 전자기록으로 작성되지 않은 자료의 전자화를 위한 기기(스캐너, 음성·영상 편집 등 기계)와 전자송달 및 통지되는 자료의 열람을 위한 전자기기 및 전자서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인증장치 등 많은 제반 요건이 요청된다. 또한 법원에서는 서면 등의 문서의 송달이 줄어들게 되므로 업무가 줄어드는 가능성성이 높으나, 기타 이를 송달받은 기관, 특히 교도소 등 수감시설 및 기타 기관(기업체 등도 포함)에서는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 등의 문제로 종이서류로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출력 등을 위한 제반시설을 새로 설비해야 하며, 따라서 궁극적인 송달 업무가 전자소송의 전 진행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송달과 관련해 단순히 송달을 통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송달하는 당사자의 실제 송달 확인 의무를 부과한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의 내용은 그 의의가 있다. 통지에 대한 송달 간주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실제 송달받지 못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어도 송달하는 당사자(발송자)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배제하는 예외적 규정을 통해 절차기회의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외적 규정이 입법화 된다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4조 제4항의 송달 간주의 규정과는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송달 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달하는 당사자(발송자)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고 이에 따라 송달받지 못함을 안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을 배제하는 등을 규정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재판의 경우, 단순히 ‘서류의 내용’이 증거로 쓰이는 것뿐만이 아닌, 서류 등의 ‘자료 그 자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원본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서류 등의 자료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존기관(보관 주체)과 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

#### 가.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의 내용

싱가포르는 1997년 전자문서제출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문서제출시스템을 적용했다. 이후 이를 대체하는 통합전자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13년 초부터 대법원의 제반 사건과 하급법원의 민사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전자소송시스템(iELS)를 활용했고 하급법원의 형사사건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이 2015년 2월부터 활용됐다.

싱가포르의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은 시범운영단계 초기부터 법무부·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확보됐고, 정식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세관·이민국 등의 행정기관과도 시스템을 연계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피고인은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의 접근할 수 없으며 상소심에만 대법원의 별도 서비스로 문서의 전자제출을 가능하게 했다.

즉,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은 공판절차는 물론 영장, 보석 등 법원에서 다루는 형사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경찰, 행정청), 소추기관(검찰) 및 법원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고, 당사자인 피고인은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됐으므로,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형사절차의 진행’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판결문의 작성은 의무적이지 않고 상소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만 작성되며, 작성되는 경우에도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과는 별도의 상용문서작성기 등에서 작성될 뿐 통합전자소송시스템(ICMS)에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징역형 선고 등의 경우 그 정보가 교정기관으로 전자적으로 전송·통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은 당사자인 피고인의 권익보호적 차원보다는 형사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더 의의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과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과의 비교

싱가포르는 비교적 일찍 전자소송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시행 초기부터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한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각계 기관의 연계를 통해 형사 전자소송의 실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형사 전자소송과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이 보

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 시행 초기부터 각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특히, 수사기관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도 형사절차에서 작성·관리·유통되는 형사 정보에 해당하므로 형사 전자소송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행정기관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이 형사절차 기관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형사절차 진행에 의의를 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 IV. 형사 전자소송에 따른 교정기관 과제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소송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종이 기록의 한계를 극복한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 진행’에 있다고 본다.<sup>7)</sup> 이에 따라 형사사법 구성원들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보인권과 보안에 대한 주의 역량을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을 통해 향상함과 더불어, 법원과 경찰, 검찰, 법무부(교정기관) 등 형사 전자소송의 책임기관들의 제도기반 마련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교정기관은 단순히 형의 집행뿐만 아닌 형사재판 중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고려해 형사사법 당사자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아래와 같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자 및 보관기간, 폐기 규정 신설 필요성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자 및 보관기간, 폐기 등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특히,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형사 전자소송의 전 과정에서 문제 될 여지가 있다. 특히 교정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전자화대상문서’를 형사정보로 보고 관리해야 할지, 보관품으로 준해 관리해야 할지도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보관자를 특정하고, 최소한의 보관기간은 정해 추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를 예비하고 보관 필요성이 없는 전자정보 외 형사정보자료에 대한 폐기 규정을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 2.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 예외 규정의 필요성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8조의 ‘제출하려는 자’를 ‘수용자’로 봐야 할지, ‘교정기관’으로 봐야 할지 문제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자가 교정기관에 해당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교정기관의 사용자등록을 의무화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교정기관은 해당 문서를 ‘전자화대상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용자가 형사재판 중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부분은 반성문이므로 이때 전자화대상문서의 제출 주체는 해당 수용자임에도 전자화문서의 제출 주체는 교정기관



7) 김한균,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생활과 과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

이므로 주체의 동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의 동일성의 문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0조 제2호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해 전자문서의 예외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이러한 예시를 구체화해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제출 주체의 동일성의 문제로 전자서명 주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교정시설에서 문제 될 여지가 많으므로 교정기관에서는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자등록을 한 피의자, 피고인 등의 경우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과 관련해 구체적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정기관에 구금 중인 자의 선택권 보장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자적 제출뿐만 아닌 송달에서도 전자적 송달만이 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예외 조항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형사 전자소송에 있어서 교정기관의 지위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은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규정해 형사소송에서 교정기관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형사 전자소송의 기관에 해당한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제출 의무가 있으며 전자송달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교정기관에까지 전자송달과 전자제출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앞서 살펴본 사용자등록을 한 수용 중인 자가 교정기관을 통해 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그 근본적 문제는 이처럼 교정기관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부담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4조 제1항<sup>8)</sup>에서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문언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보이나, 제15조 제1항 1호<sup>9)</sup> 해석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교정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성이 분명하나, 형사 전자소송에 대해 특별법에 해당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서는 그 예외의 가능성을 전원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4. 당사자 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송달에 대한 의무 부과의 필요성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송달에 있어서 발송 외의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에서는 송달하는 당사자가 송달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송달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송달하는 당사자에게 송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실제 형사절차의 당사

8)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3.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9) 제15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해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의 진술기회의 보장을 절차적·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그 의의를 가진다.

특히, 교정기관에 대한 전자송달(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4조 제1항 제1호)과 송달간주(동조 제4항)<sup>10)</sup>를 규정한 형사절차전자문서법과 관련해 수용자의 이송 등 예외적 상황에 의해 실제 당사자가 송달 받지 못하는 상황의 발생과 관련해 단순히 교정기관에의 발송으로 송달하는자의 책임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송달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교정기관의 회신 등의 절차 마련을 통해 송달하는자의 확인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교정시설의 형사사법 포탈 시스템의 접근성 보장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과 더불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의 운영 및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포탈 시스템을 운영해 수사·기소·재판·집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위 시스템의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교정기관에서도 특별사법경찰팀(대)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 시스템을 이용해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용기록 등 자료의 확인만을 위해 보조적으로 위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도 형사절차상 작성·관리·유통되는 형사정보에 해당하므로 형사 전자소송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행정기관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하고 형사사법 포탈 시스템 등 형사 전자소송 관련 시스템의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V. 맺는말

2024년 10월 20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실질적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을 앞두고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중 하나인 교정기관에서도 많은 시행착오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기관과 관련한 쟁점과 과제를 고려해 준비한다면 형사 전자소송을 통한 형사사법개혁에 맞춰 교정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물질적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절차는 형의 집행을 통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교정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단순히 교정기관에서의 노력만이 아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모두 이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펴본 쟁점과 과제는 교정기관에서 그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라 형사 전자소송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노력의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김한균,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
- 사법정책연구원,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2020.

# 코로나19에 대한 독일법계 국가의 교정기관의 대응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며

## II. 코로나19에 대한 독일어권 국가 교정기관의 대응

## III. 맺으며

## I. 들어가며

2023년 8월 31일부로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다.<sup>1)</sup>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2023년 7월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지난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0.07%(BA.5 변이 우세종화 시기), 0.10%(BN.1 변이 우세종화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비록,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로 유지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되나 코로나19의 위협은 예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9년 12월 29일 중국 우한시의 병원에서 최초의 환자가 보고된 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전 지구적 전염병 상태(Pandemic)를 선언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는 모든 것이 코로나19와 연결돼 사회과학에서 요구되는 중립적 관찰자의 입장이란 생각할 수 없었으나,<sup>2)</sup> 이제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동생활 시설인 교정시설 안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일반사회에서의 발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3)</sup>

특히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수용자 중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상황과 비교해, 교정시설 안에서 코로나19가 거의 발병하지 않았고 사망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독일어권 국가들, 즉,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독일 교정기관의 대응을 주로 다루면서<sup>4)</sup> 그에 상응하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상황을 함께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 2023년 8월 23일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코로나19,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gubun=BDJ&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266&board\\_id=312&contSeq=7266](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gubun=BDJ&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266&board_id=312&contSeq=7266)).

2) Drenkhahn, Covid-19 im Strafvollzug - Infektionsschutz, Resozialisierung und Lebensqualität, in: Pohlreich/Beck/Meier/Stefanopoulou/Ziemann (Hrsg.), Strafrecht in der Krise, Nomos 2022, S. 199.

3) 권수진·장진환·김용명·박선영·최준혁·조윤오·오병우·정지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II)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1면.

4) 이 부분의 서술은 권수진·장진환·김용명·박선영·최준혁·조윤오·오병우·정지혜, 앞의 책, 236~254면(최준혁 집필 부분)을 요약 정리했다.

## II. 코로나19에 대한 독일어권 국가 교정기관의 대응

### 1. 독일

#### 1) 수용자 인원 및 코로나19 확진에 관한 통계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2월 독일 교정시설에는 월평균 63,852명이 수감돼 있었다. 그중에서 13,137명이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이었고 45,062명이 자유형집행 중인 성인이었으며 4,773명은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였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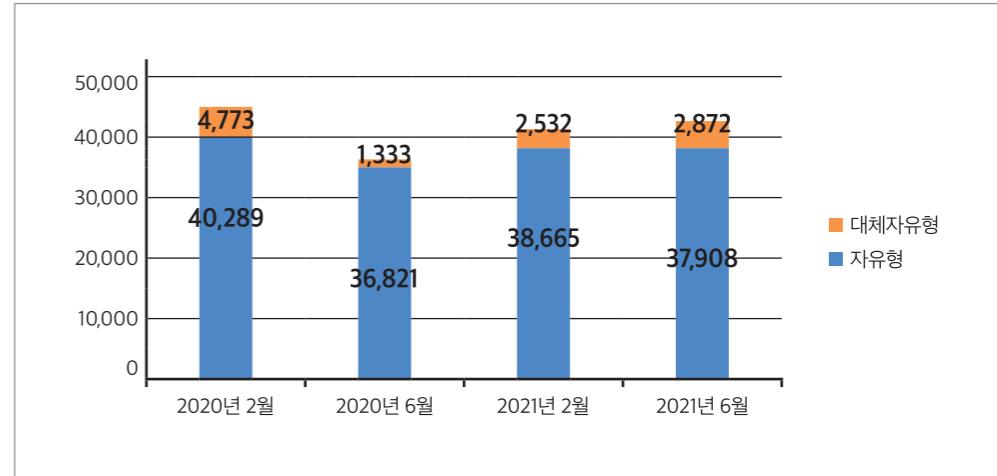
특히 감염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 교정시설에 다수 수감됐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50세 이상이 전체 재소자의 16.6%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23.1%가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아 오랫동안 외부와 격리된 상태였다. 나아가 재소자의 다수가 술 등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거나 HIV, 헤파티스 등 다른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sup>6)</sup>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여성 재소자는 3,221명으로 남성재소자 54,379명보다 적으나 전체 재소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0년의 3.9%에서 2020년에는 5.7%로 상승했다.<sup>7)</sup>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교정기관 수용자 중 대체자유형 대상자의 수를 살펴보면 2019년 평균 재소자 수(월별)는 45,417.75명이며 그중 대체자유형 대상자의 수는 4,569.5명으로 약 10.1%를 차지했다.<sup>8)</sup>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재소자 수와 대체자유형 대상자 수가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대체자유형 대상자 수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의 자유형집행대상자와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의 수를 비교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자유형집행대상자의 수를 살펴보면 2021년 6월의 자유형집행대상자의 수는 대상 기간 중 가장 많은 2020년 2월과 비교했을 때 10% 정도 감소했다. 더욱 극적인 변화는 대체자유

형 집행대상자의 수인데 2020년 6월의 대상자 수는 2020년 2월의 30% 정도에 불과했다. 재소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교정기관은 새로 들어온 재소자의 격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sup>9)</sup>

<그림 1> 자유형 집행대상자와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 수의 비교<sup>10)</sup>



다음은 교정시설 내의 코로나19 감염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재소자는 격리됐고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온 재소자도 2주 동안 격리됐다.<sup>11)</sup>

2020년 말까지의 독일 전체의 교정시설 내 감염자 수는 <표 1>이 보여주듯이 383명이며 1,000명당 감염률은 7.3명에 불과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sup>12)</sup> 독일 전체로 보면 1일 감염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수백 명에서 2020년 3월 말에는 이미 5천 명을 넘은 상황이었다는 점<sup>13)</sup>과 비교하면 교정시설 내의 감염자 수는 매우 적은데, 특히 같은 시기 약 150만 명의 재소자 중 31만 5천 명 이상이 감염됐고 1,875명이 사망한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독일 교정당국의 대응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구속집행정지에 해당하는 구속명령 집행중단(독일형사소송법 제116조)은 피고인이 고령이며 병력이 있는 때 정당화된다는 것이 독일 실무의 입장이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해석

5) Dünkel/Morgenstern, "Der Einfluss von Covid-19 auf den Strafvollzug und die Strafvollzugspolitik in Deutschland", Neue Kriminalpolitik 2020, 434.

6) Schaeff, "Auswirkung der COVID-19-Pandemie auf den Justizvollzug", MschrKrim 2021, 28.

7)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Teil VII Kap. 5 Rn. 8.

8)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3.

9)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6.

10) Bögelein, "Vollstreckung der Ersatzfreiheitsstrafe im COVID-19-Pandemieverlauf", Neue Kriminalistik 2022, 212.

11)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5.

12) Schaeff, MschrKrim 2021, 35.

13) Schaeff, MschrKrim 2021, 27.

하고 있으며 함부르크 고등법원도 교정기관에서의 재소자의 감염위험이 일반 시민의 감염위험보다 크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sup>14)</sup> 교정기관 내에서의 낮은 감염률에 대한 통계는 독일 실무와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실제 상황에 기반했고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2020년 12월 말까지 재소자 감염 수 및 감염률<sup>15)</sup>

주	감염 수	1,000명당 감염률
바덴-뷔르템베르크	37	5.9
바이에른	25	2.6
베를린	41	13.4
브란덴부르크	2	1.9
브레멘	0	0
함부르크	47	26.7
헤센	60	14.5
메클렌부르크-포풀메른	0	0
니더작센	4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57	11.5
라인란트-팔츠	0	0
잘란트	1	1.4
작센 <sup>16)</sup>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작센-안할트	0	0
슬레스비히-홀슈타인	1	0.9
튀링겐	8	5.8
독일 전체	383	7.3

14) 그에 관하여 최준혁, “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 22면.

15) Schaeff, MschrKrim 2021, 35. 다만 형집행은 각 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독일연방 수준의 통계는 없으며 각 주의 통계를 개별적으로 모은 것이다.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6.

16) Dünkel/Harrendorf/Dirk van Zyl Smit, The Impact of COVID-19 on Prison Conditions and Penal Policy, 227에 의하면 작센주는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심각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통계로는 42명의 교정공무원과 49명의 재소자가 감염돼 1,000명당 감염률은 1.7이었다. 2021년 2월의 감염자는 10명의 교정공무원과 2명의 재소자였다.

## 2) 코로나19가 독일형형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인해서 독일형형은 중대한 퇴보를 맞았다고 지적됐다.<sup>17)</sup> 접견, 형의 개방집행 등 재소자와 외부와의 접촉이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자유시간 중의 공동체류(Aufschluß), 재소자 상호방문(Umschluß)<sup>18)</sup>, 작업 및 학습 등도 마찬가지였다. 락다운(Lockdown)은 구금의 억압적이고 비인도적인 특성을 강화시켜서, 치료 및 재사회화, 재통합이라는 목표와 연결된 형집행의 개혁 노력을 퇴보시켰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 근거와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 (1) 교정시설의 대응

#### 가. 코로나19에 대한 교정시설의 대응 방향

독일의 교정시설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sup>19)</sup>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는 59.5자리 중 7자리가 공석이었고 작센에서는 7개의 교정시설에 상주 의사가 없었으며 17.5자리 중 8.5자리가 공석이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위에서 살펴본 재소자 집단 및 교정시설 내부의 감염병 취약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헤센주의 한 교정시설에서 2020년 11월 초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는 재소자로부터 3일 이내에 적어도 26명의 재소자와 2명의 공무원이 감염된 사례는 교정시설 내부의 감염병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sup>20)</sup>

독일 각 주의 법무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의 유입으로부터 교정시설을 가능한 보호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외부의 접촉을 차단해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재소자의 건강의 보호 및 교정시설의 기능의 유지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 재소자의 유동성이 코로나19 확산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됐는데, 2019년에는 매달 평균적으로 17,675명이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오고 있었고, 이러한 인원이 유입돼 많은 재소자를 좁은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을 교정기관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sup>21)</sup> 그래서, 유동인구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17)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106 Rn. 11.

18) 자유시간 중의 공동체류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소자 상호방문은 허용돼야 한다.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12 Rn. 4.

19) Schaeff, MschrKrim 2021, 28.

20) Schaeff, MschrKrim 2021, 28.

21) Schaeff, MschrKrim 2021, 31.

방향의 정책은 교정시설 내의 재소자의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었다.

#### 나. 외부/교도소 내부와의 접촉 제한 및 제한을 대체하는 다른 수단

모든 주에서 교정시설 외부자와의 접견이 금지됐다. 예외적으로 변호인과의 접견은 허용됐으나 이때도 가림막을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했다. 반대로 접견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가족과 친지에 대한 통신수단을 활용한 연결은 더욱 쉬워졌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sup>22)</sup> 예를 들어 베를린과 니더작센의 재소자는 특정한 구금실에서 전화를 할 수 있었으며, 함부르크에서는 논란은 있었지만 선불 스마트폰을 재소자에게 주어서 교정시설 내부의 기존 통신수단과 무관하게 집중적인 외부접촉을 할 수 있게 하고 반면에 바이에른 등의 주에서는 월 40분으로 통화 시간이 제한됐다. 베를린,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에서는 스카이프를 이용해 재소자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통화를 위한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월 15~30분으로 제한됐다.

베를린, 함부르크,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숀레스비히-홀슈타인 등에서는 자유시간 중의 공동활동, 작업, 수업, 그룹활동 등의 재소자 간 접촉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거나 보류됐는데, 재소자 상호방문도 마찬가지였다.<sup>23)</sup> 비록 1일에 최소 1시간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시간(Freistunde) 또는 세면실 등에서의 다른 재소자 접촉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나 결과적으로 재소자는 하루 중 거의 23시간을 구금실에서 고립적으로 보내게 됐다.<sup>24)</sup>

바이에른, 베를린, 함부르크,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등 많은 주에서는 행정직원과의 동반 외출 또는 감독 없이 시설을 떠나도록 하는 등의 집행완화도 거의 완전히 유보됐다. 장기간 감독 없이 교정시설을 떠나있다가 돌아온 재소자는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온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교정시설의 업무역량을 초과한다는 이유가 제한의 근거로 제시됐다.<sup>25)</sup> 하지만 집행완화의 완전한 유예는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에게도 악영향을 주었는데, 가령 바이에른에서는 교정시설의 분위기가 나빠져 재소자 간 대립 및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소자의 침해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22) Schaeff, MschrKrim 2021, 29.

23) Schaeff, MschrKrim 2021, 30.

24)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9.

25) Schaeff, MschrKrim 2021, 30.

#### 다. 재소자 수의 축소

재소자 수를 축소하기 위한 각 주 법무부의 정책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sup>26)</sup>

1단계는 정책의 핵심으로서,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법을 모든 주가 활용했다. 집행기관인 검찰청<sup>27)</sup>은 법무부의 동의를 받아(형집행법시행령 제46조a 제1항) 대체자유형 집행을 위한 소환 또는 대체자유형의 명령<sup>28)</sup>을 몇 달간 유예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환이 유예된 자는 헤센주에서는 2020년 6월 말까지 7,600명에 달했고 작센주에서는 2020년 7월 중순까지 3,000명에 이르렀다.<sup>29)</sup>

2단계는 자유형집행의 연기였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주는 12개이다. 그 기간은 6개월(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12개월(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4개 주), 18개월(브레멘, 잘란트), 24개월(브란덴부르크) 등이었으며 36개월을 연기한 주(베를린, 함부르크, 작센)도 있었다.

3단계는 브란덴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작센 등 10개 주가 취한 방식으로 이미 집행 중인 대체자유형을 중단해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를 교정시설에서 잠정적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150명, 베를린은 271명, 헤센은 402명, 라인란트-팔츠 132명, 작센 181명이 이를 통해 교정시설에서 나갔다.<sup>30)</sup> 베를린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집행상의 이유 또는 감염방지라는 실무상 이유를 들어 사면권을 행사해 60세 이상 대체자유형 대상자 등에 대한 잔여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40일 수에서 90일 수만큼 면제했다. 그러나 함부르크, 메클렌베르크-폴포메른, 니더작센, 숀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등은 정의 또는 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잔여 대체자유형의 집행면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sup>31)</sup>

4단계로 3개 주는 집행중단의 대상을 자유형으로 확대했는데 함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18개월까지로 했으며, 숀레스비히-홀슈타인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단기형으로 했다. 다만 그 요건이 엄격했는데,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sup>32)</sup> 자유형집행 기간 중 심각한 규율 위반이 없어야 하며 형의 개방집행

26) Schaeff, MschrKrim 2021, 32.

27) 형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에 관하여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455조a, 제456조가 규정한다.

28) 형사소송법 제459조e(대체자유형의 집행) ① 대체자유형은 집행관청의 명령에 따라 집행된다. (하략)

29) Schaeff, MschrKrim 2021, 32.

30) Schaeff, MschrKrim 2021, 33.

31) 사면이 형사정책적, 법이론적 문제가 있으나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현재 상황에서 의미 있는 해결책인 동시에 재소자의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54.

32) 오스트리아 법무부도 행정명령에 비슷한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결국 그러한 범죄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미로서 비례원칙과 인간의 존엄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Kröll/Platzer/Ruckenbauer/Schaupp, Die Corona-Pandemie, S. 149.

대상이었다면 이의 없이 그 집행을 마쳤어야 하며 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1,051명, 함부르크는 60명, 숀레스비히-홀슈타인은 121명의 재소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sup>33)</sup> 각 주의 대응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20년 3~4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형집행 관련 조치<sup>34)</sup>

주	집행을 위한 소환 X		집행 중단	
	대체자유형	자유형	대체자유형	자유형
바덴-뷔르템베르크	○	<6개월	○	×
바이에른	○	<6개월	×	×
베를린	○	<36개월	○	×
브란덴부르크	○	<24개월	○	×
브레멘	○	<18개월	○	×
함부르크	○	<36개월	○	<18개월
헤센	○	<12개월	○	×
메클렌부르크-포풀메른	○	×	○	×
니더작센	○	<12개월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12개월	-	<18개월
라인란트-팔츠	○	×	○(개별)	○(개별)
잘란트	○	<18개월	×	×
작센	○	<36개월	○	×
작센-안할트	○	<12개월	×	×
숀레스비히-홀슈타인	○	×	○	단기
튀링엔	○	×	×	×

위에서 설명한 여러 조치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의 기간 중 교정기관에 새로 들어온 재소자의 수는 월 12,900명에서 3,799명으로 70.5% 감소했다.<sup>35)</sup> 대부분 주에서, 그 주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그 주의 교정시설이 과밀수용 상태인지 여부와 관련 됐다. 즉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레멘은 1~3단계 조치를 취했고 함부르크는 모든 조치를

33) Schaeff, MschrKrim 2021, 33.

34) Schaeff, MschrKrim 2021, 32.

35) Schaeff, MschrKrim 2021, 34.

다 취했지만 과밀수용의 문제가 없었던 메클렌부르크-포풀메른이나 잘란트는 두 단계의 조치만을 취했는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또한 과밀수용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반면에 각 주의 집권당이 정치적 입장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위험한 범죄자를 풀어주어서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대중에게 주지 않으려는 노력 및 처벌을 지향한다는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37)</sup> 동일한 조치를 취한 여러 주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와 숀레스비히-홀슈타인은 대체자유형의 집행중단과 관련해 동일한 조치(3단계)를 취했는데, 2020년 2월과 5월 말을 비교하면 전자는 21.4%로 모든 주 중 가장 많이 재소자 수가 감소했으나 후자는 8.8%로 가장 적었다.<sup>38)</sup>

## (2) 법률의 근거 또는 관련 지침 및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제

독일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근거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그 법률은 기본권의 당해 조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형자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근거는 행형법의 규범이 돼야 하며, 연방 형집행법 제196조와 각주의 형집행법은 제한되는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sup>39)</sup> 다만 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기본권들이 수형자들에게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독일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비록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sup>40)</sup> 기본권은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교정시설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유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41)</sup>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질서가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 일반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요건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충분히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귀결된다.<sup>42)</sup> 앞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자유형집행의 퇴보와 관련해 논의되는 쟁점은 접견, 형의 개방집행 등 재소자와 외부와의 접촉과 교정시설 내부에서의 자유시간 중의 공동체류, 재소자 상호방문

36) Schaeff, MschrKrim 2021, 33.

37)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5.

38) Schaeff, MschrKrim 2021, 35.

39) 리우벤틸(신양균·김태명·조기영 역), 독일행형법, 135면.

40)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107 Rn. 2.

41) Kersten/Rixen, Der Verfassungsstaat in der Corona-Krise, C.H.Beck 2020, S. 58.

42)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4 Rn. 27.

등이다.

감염병예방법 제36조는 교정기관의 권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호조치(동법 제28조) 등 감염병예방법상의 조치는 연방의회가 법규명령의 형태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다른 관청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동법 제32조), 이러한 권한은 주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으며 교정기관 또는 주 법무부는 감염병 예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며 감염병예방법이 위에서 본 내용 이외의 권한 부여를 하고 있지도 않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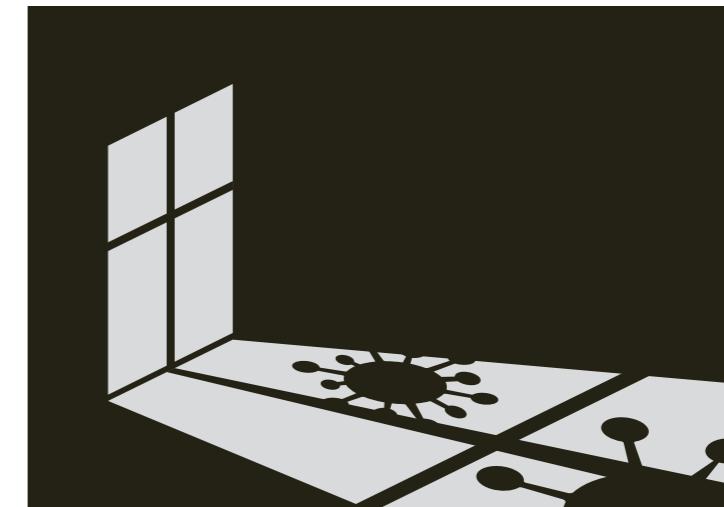
그렇다면 결국 주 형집행법이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에른주 형집행법의 예를 들어 주 형집행법이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에른주 형집행법 제58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보호돼야 한다는 연방 형집행법 제56조와 상응하는 지원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제108조는 건강 보호를 위한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재소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원의무의 내용으로 포섭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수인 의무 또는 청구권이나 권리의 박탈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sup>44)</sup> 그러나 접견의 금지나 제한, 집행완화의 금지, 재소자의 격리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독일의 각 주에서 시행한 조치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인데 이는 독일에서는 연방의 입법 권한이고 연방법인 감염병예방법이 이를 완전히 규정하기 때문에 각 주의 형집행법은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sup>45)</sup>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31일에 베를린주 상급법원의 중요한 결정(KG Berlin 5 Ws 64/21 Vollz - 594 StVK 220/20 Vollz)이 있었다.<sup>46)</sup> 당사자인 재소자는 고살죄 등으로 14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는데 부인 및 세 아들에 대해 8시간을 상한으로 하며 감시받지 않는 장기접견(Langzeitbesuch)이 허용된 상황이었다.<sup>47)</sup> 특히 세 아들은 베를린이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30분인 통상접견을 위해 그들이 베를린까지 오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재소자

가 장기접견을 신청했으나 교정당국에 의해 2020년 11월에 거부됐는데 베를린주 형집행법은 장기접견의 시기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에게 처분 권한을 주고 있다. 베를린주 상급법원은 2020년 11월의 거부처분이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독일기본법(제6조)을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보았듯이 베를린주 형집행법은 장기접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친족에 대한 장기접견을 특히 지원할 의무를 교정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베를린주 형집행법 제30조는 연방 형집행법 제25조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로워질 경우에 접견 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란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해석이 필요한데 재소자에게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접견을 금지할지에 대해서는 교정기관에 처분 권한이 있는데 교정기관은 이 때 재소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접견규정에 의하면 장기접견은 완전히 금지되며 통상접견의 경우에도 최소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상접견만이 가능한데 이는 배우자와의 신체접촉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해 접견에서 매우 중대한 정서적 침해가 발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베를린주 상급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접견에서 가림막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한다). 나아가 교정당국이 재소자의 장기접견 신청을 거의 3년 동안 거부한 것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43) Gietl, "Infektionsschutz gegen SARS-CoV-2 im Justizvollzug - eine Verordnungslücke", COVID-19 und Recht (COVuR) 2020, 854.

44) Gietl, COVID-19 und Recht (COVuR) 2020, 854.

45) Gietl, COVID-19 und Recht (COVuR) 2020, 856;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Vor § 106 Rn. 12.

46) 이 결정에 대하여 Dünkel/Harrendorf/Dirk van Zyl Smit, The Impact of COVID-19 on Prison Conditions and Penal Policy, 236.

47) 연방 형집행법은 장기접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주 형집행법은 '이러한 접견이 재소자와 가족, 동반자 관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대방과의 접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재소자가 그에 적합한 경우' 장기접견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베를린 주 형집행법도 마찬가지이다.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II § 26 Rn. 23.

### 3) 일상으로의 복귀 노력

#### (1) 잠정조치의 의미

'일상으로의 복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이후에는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인데, 이는 대체자유형 등에 관한 모든 우대조치가 잠정적이라는 의미이다.<sup>48)</sup>

나아가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은 주인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은 그 이후에도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계획이 없는데 왜냐하면 교정시설의 수용인원과 관련된 문제 또는 감염자 격리에 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49)</sup> 즉, 이러한 잠정조치는 재사회화 등 형집행의 목적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교정시설 기능의 유지를 우선적인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자유형 및 대체자유형 집행에 관한 각주의 조치와 주 정부의 정치적 성향의 관련성이 크게 없다는 점에 대해 이미 언급했는데, 헤펜델(Hefendehl)도 이 쟁점을 논의하면서 적군파나 9.11 테러에 관한 과거의 논의를 끌어들인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시설이 빈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대해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있고 대중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sup>50)</sup>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그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 중의 하나가 대체자유형의 집행이다. 대체자유형 집행에 관해 <그림 1>에서는 2021년 6월까지의 통계를 제시했으나 그 이후의 통계는 2,734명(7월), 3,221명(8월), 3,557명(9월), 3,931명(10월), 4,076명(11월), 3,596명(12월) 등으로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51)</sup>

48) Hefendehl, "Gefängnisse in Not: Was für eine Chance?" Neue Kriminalpolitik 2020, 428.

자유형집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공판절차 정지에 관하여 독일의 입법자는 민사소송법, 파산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서의 코로나 팬데믹(Pandemie)으로 인한 결과 완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C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 COVFAg) 제3조를 통해 공판절차를 최대한 3개월 10일까지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그에 대해서 최준혁, "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 15면; Ahmed, "Die Öffentlichkeit unter Quarantäne", Festschrift für Feltes, 2021, 425). 그러나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제3조를 통해 도입된 형사소송법개정법률 제10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49) Bögelein, "Vollstreckung der Ersatzfreiheitsstrafe im COVID-19-Pandieverlauf", Neue Kriminalistik 2022, 221.

50) Hefendehl, Neue Kriminalpolitik 2020, 428.

51) Bögelein, Neue Kriminalistik 2022, 223. 다만 여기의 2,333명(2021년 6월)은 같은 연구자의 논문에서 나왔음에도 <그림 1>의 2020년 6월의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 (2)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조치의 유지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접견은 교정시설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사회화라는 형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된다.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화상통화도 가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돼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다. 그래서 가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개방시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폐쇄시설에서 비디오접견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sup>52)</sup> 이미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폐쇄구금시설의 각 구금실에 전화기를 설치해 재소자가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했던 니더작센은 이러한 변화의 긍정적인 선례로 보인다.<sup>53)</sup>

교정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도 코로나19의 부수적이나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예로 행정업무 등에 대한 재택근무의 증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질병 발생이 감소했다고 많은 교정기관이 보고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의 감소 등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감소 또한 교정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sup>54)</sup>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집행완화가 완전히 유예되는 상황 중에서도 개별 사안에서 교정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의 격리'를 목표로 여러 주 동안 교정시설을 떠나도록 하는 조치(Ausgang)가 시험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는데, 이는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소자의 재사회화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sup>55)</sup>

#### (3) 단기자유형의 감소와 대체자유형의 개선에 관한 논의

교정시설의 구금자 수 감소를 위해 단기자유형 및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가 주된 목표가 됐다는 점은 이 두 형별의 집행이 교정시설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점과 함께 이 두 형별을 지금의 형태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52) Dünkel/Harrendorf/Dirk van Zyl Smit, The Impact of COVID-19 on Prison Conditions and Penal Policy, 237.

53)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5.

54)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7.

55)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48.

먼저, 단기자유형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매우 오래됐고<sup>56)</sup> 그에 대해 입법을 통해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독일에서는 매년 7,000여 명에 대해 6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이 선고되고 집행된다고 한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단기자유형이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되거나 전자감시의 형태로 집행된다는 점을 볼 때<sup>57)</sup>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정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단기자유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독일에서는 1년에 약 5만 건 정도의 대체자유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치였다.<sup>58)</sup> 특히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벌금형의 선고로 종결되며 자유형보다 벌금형이 경미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독일기본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하면 자유박탈은 법관만이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 없이 사후적으로 벌금형이 구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나아가 대체자유형의 집행대상자 중 약물중독자나 노숙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다는 비판도 있었다.<sup>59)</sup> 2018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서독에서 정신병원의 병상 수가 2003년부터 약 40% 감소했다. 반면에 대체자유형의 집행대상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의 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자보다 급격히 증가했는데 술이나 약물남용자의 경우 심지어 15배로 증가했다.<sup>60)</sup> 그리고 대체자유형 집행대상자의 상당수는 재산범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sup>61)</sup> 대체자유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유형의 기간과 벌금형의 일수를 1:1이 아니라 1:2로 조정하는 등<sup>62)</sup> 대체자유형을 형집행이라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보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이 제기된다.<sup>63)</sup>

56) 이미 리스트(Liszt)는 벌금을 실제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대체물로 단기자유형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단기자유형은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극빈층에게 국가가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제도로 비도덕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최준혁, “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10면.

57) Dünkel/Morgenstern, “Der Einfluss von Covid-19 auf den Strafvollzug und die Strafvollzugspolitik in Deutschland”, Neue Kriminalpolitik 2020, 453.

58) Seehaus e.V. (Hrsg.), Alternative Strafvollzugsmodelle: 10 Jahre Strafvollzug in freier Formen in Sachsen, DBH - 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e. V. 2022, S. 114.

59) Seehaus e.V. (Hrsg.), Alternative Strafvollzugsmodelle: 10 Jahre Strafvollzug in freier Formen in Sachsen, S. 115.

60) Bögelein, Neue Kriminalistik 2022, 209.

61) Bögelein, Neue Kriminalistik 2022, 224.

62) 그에 관하여 최준혁, “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34면.

63) Bögelein, Neue Kriminalistik 2022, 224.

## 2. 오스트리아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의 평균 재소자 수는 9,329명이었으나 그 후 8,674명(2020년 5월 1일), 8,560명(2020년 6월 1일), 8,544명(2020년 10월 1일)에서 8,488명(2021년 1월 1일)까지 감소했다가 8,650명(2022년 5월 1일)으로 약간 증가했다.<sup>64)</sup>

이 시기에 오스트리아 교정기관의 가장 주된 목표는 재소자의 건강 보호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가 행해졌다.<sup>65)</sup>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된 전략은 교정기관에 신규로 유입되는 재소자 수의 감소였는데 이를 위해서 형사재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았다. 교정시설 내부에서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는 외부와의 분리, 엄격한 위생 및 거리두기에 관한 규율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교정시설 내에서의 일상생활 및 작업, 교육 등도 제한됐으며 가석방 준비를 위한 조치도 제한됐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았던 시기에는 교정시설에 신규 유입된 재소자는 14일간 격리됐고 그 후 감염자가 줄어든 시기에는 10일간 격리됐다.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착용했고 재소자와의 대화는 가림막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변호사의 방문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됐으며 대면접견 대신 비디오접견을 활용했으며 보호관찰관과의 대면도 전화 또는 비디오를 이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그 외의 다른 방문은 완전히 차단됐으며 재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이나 교육목적의 외출 및 귀휴도 초기에는 허락되지 않았다.<sup>66)</sup> 장기간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및 다른 사람들과 영상대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됐고 전화를 통한 접촉의 가능성도 확대됐다.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제한은 적용됐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의무는 재소자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시설에서는 오래 지속됐다. 교정시설 안에서의 락다운으로서 대부분의 활동은 제한됐으나 시설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작업장도 폐쇄됐으나 몇 개월 후 다시 열었고 학교 수업은 제한적인 형태로 유지됐다. 하지만 작업을 하지 않으며 교육도 받지 않는 재소자는 감방을 떠날 수 없었다.<sup>67)</sup>

64) Bruckmüller/Hammerschick, “Der österreichische Strafvollzug während der Pandemie – Massiver Einschränkungen, aber keine dauerhaften Veränderungen –”, Neue Kriminalistik 2022, 322.

65)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1.

66)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3f.

67)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4f.

이러한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교정기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성공했는데 팬데믹 초기에는 신규 유입되거나 교정시설에 거주하는 재소자 및 교정공무원의 감염사례가 발견됐으나 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다.<sup>68)</sup>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주된 정책은 행정명령을 통한 3년 이하의 자유형에 대한 집행중단이었는데 특정한 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결구금에 관한 실무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결구금자의 평균 수는 1,756명(2019년)에서 1,529명(2021년 1월 1일)으로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고소 건수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이해된다.<sup>69)</sup> 자유형집행 방법으로서의 전자재택구금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특별히 더 많이 활용됐다고 보기 어렵다.<sup>70)</sup>

코로나19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 변경의 근거가 된 법률은 사법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betreffend Begleitmaßnahmen zu COVID-19 in der Justiz)이다. 그런데 이 법률 제12조는 동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규정했다.<sup>71)</sup> 비록 이 법률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유지됐으나<sup>72)</sup> 2022년 당시 현행법 제12조는 그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한시적이라는 성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고, 2023년 6월 30일 폐지됐다. 우대 조치가 잠정적이었음을 오스트리아의 법률은 명확히 보여준다.

### 3. 스위스

스위스 교정기관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는 매우 적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위스에는 자유박탈에 관련된 교정기관 91개의 정원은 2022년 통계에 의하면 7,341명으로<sup>73)</sup> 2021년의 경우 평균 수감인원은 6,316명으로 85.4% 정도의 수감률을 보였으며 그중 1,986명이 미결구금이었다.<sup>74)</sup>

68)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1.

69)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8.

70) Bruckmüller/Hammerschick, Neue Kriminalistik 2022, 328; Dünkel/Harrendorf/Dirk van Zyl Smit, The Impact of COVID-19 on Prison Conditions and Penal Policy,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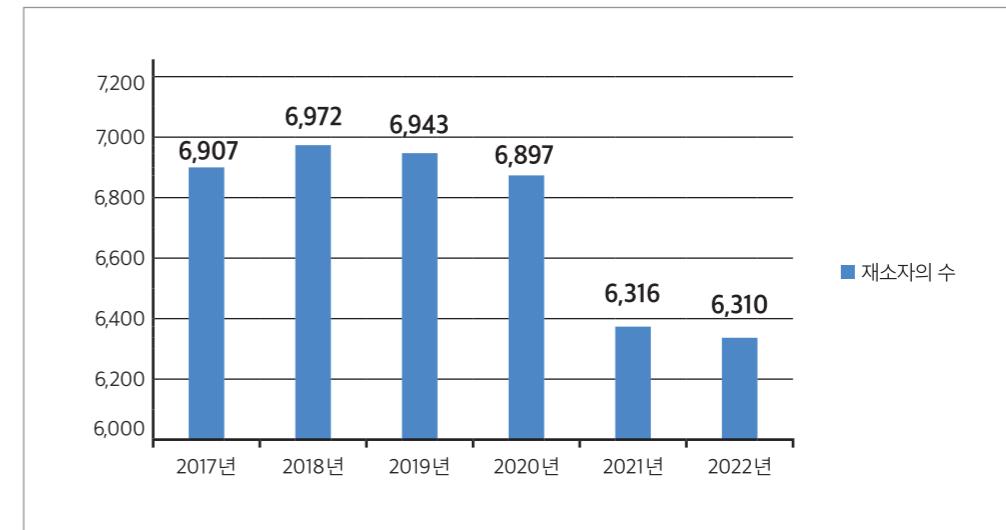
71) Kröll/Platzer/Ruckenbauer/Schaupp, Die Corona-Pandemie, Nomos 2020, S. 143.

72)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20011087>(2022. 8. 31. 최종검색).

73) Wegel/Baier, "Die Erfahrungen mit COVID-19 im schweizerischen Strafvollzug", Neue Kriminalistik 2022,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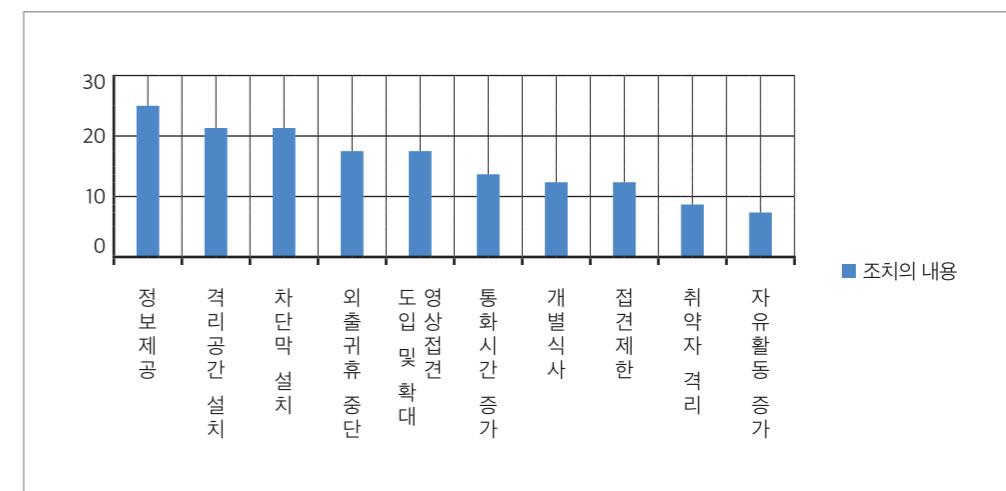
74) Wegel/Wardak/Meyer, "Covid-19 Präventionsmassnahmen aus der Sicht von Inhaftierten", Forum Strafvollzug 2022, 33.

<그림 2> 2017~2022년 스위스의 평균 수감인원<sup>75)</sup>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스위스도 다른 국가처럼 락다운을 실행했는데, 교정기관에서는 면회가 제한되고 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sup>76)</sup> 26개의 교정시설 소장에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한 결과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스위스의 조치<sup>77)</sup>



75) Wegel/Baier, Neue Kriminalistik 2022, 336.

76) Wegel/Baier, Neue Kriminalistik 2022, 333.

77) Wegel/Wardak/Meyer, Forum Strafvollzug 2022, 34.

스위스에서 자유형의 집행은 각 주의 관할인데, 몇몇 주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단기 자유형 또는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중단했다.<sup>78)</sup>

#### 4. 시사점

##### 1) 단순비교의 불가능과 변화의 필요성

우리의 상황은 재소자 수와 수감형태의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2월 독일 교정시설에는 월평균 63,852명이 수감됐으나 2020년 6월까지 수감자의 수치는 55,525명까지 감소했는데 이때의 10만 명당 수감률은 67명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네덜란드 정도의 낮은 수치인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sup>79)</sup>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53,920명으로 10만 명당 수감률은 105명이다.<sup>80)</sup> 2020년 기준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8,600명임에 반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3,878명<sup>81)</sup>으로 수용정원의 110%를 넘는다.

2020년 2월 기준의 독일 통계를 다시 보면, 수감자의 구금 형태에서 전체의 3/4이 독거수용이었으며 나머지 1/4인 혼거수용의 대부분 또한 역시 한 구금실에 2인이 수용된 경우였다.<sup>82)</sup> 이와 대비해 우리나라의 구금 형태가 어떠한지는 과밀수용에 관한 획기적인 결정인 헌법재판소 2016년 12월 29일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sup>83)</sup>이 잘 보여준다.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교정시설의 구금현황을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의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요소는 지나치게 많은 재소자가 좁은 공간에 머무르며 그 공간에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해 10만 명당 수감률을 살펴보면, 우리와 비교했을 때 독일이 훨씬 낮으며 그 외에도 독일의 교정시설의 수용 형태는 대부분 독거수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 각 주의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의 수도 매우 적

78) Weigel/Baier, Neue Kriminalistik 2022, 338.

79)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34; Schaeff, MschrKrim 2021, 33.

80) [https://www.prisonstudies.org/sites/default/files/resources/downloads/world\\_prison\\_population\\_list\\_13th\\_edition.pdf](https://www.prisonstudies.org/sites/default/files/resources/downloads/world_prison_population_list_13th_edition.pdf)  
(2022. 8. 12. 최종검색) 2021년 교정통계연보, 62면에 따르면 10만 명당 109명이다.

81) 2021년 교정통계연보, 60면.

82)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36.

83) 최준혁,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교정학회, 2018, 165면.

였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연구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원인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감률이 낮다는 점과 교정시설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sup>84)</sup> 반면 우리는 혼거수용이면서 과밀수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은 ‘일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 2)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유지할 필요성

###### (1) 교정시설의 과밀화 방지

이미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독일의 10만 명당 수감률이 2004년부터 2019년 사이에 96명에서 77명으로 20%가량 감소했음을 볼 때<sup>85)</sup> 만약 독일과 비교하겠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란 무엇보다도(교정시설의 추가적인 건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렵다면) 수감자의 수를 교정시설 수용정원 이하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자유형 및 단기자유형의 미집행을 통해 4,364명의 재소자가 감소한 2020년 3월 말 독일 통계를 보면 재소자의 독거수용률은 75%에서 77.5%로 상승했는데,<sup>86)</sup> 이러한 노력이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는 결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

###### (2) 재소자 수용 형태의 변화 필요성

교정시설 내에 있는 재소자 및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를 위한 여러 조치로 재소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교정 및 재사회화라는 형집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방지와 함께 구금 형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 목표의 달성을 자체가 교정 및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이는 교정공무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 경감과도 연결돼 자유형 집행의 목표인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84) Weigel/Baier, Neue Kriminalistik 2022, 333.

85) Dünkel/Morgenstern, Neue Kriminalpolitik 2020, 434.

86) Dünkel/Morgenstern, Der Einfluss von Covid-19 auf den Strafvollzug und die Strafvollzugspolitik in Deutschland, Neue Kriminalpolitik 2020, 434.

### (3) 비대면 접촉의 기회 증가를 위한 조치의 유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비대면을 위해서 도입한 조치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들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접촉의 방법을 늘려 재소자와 사회의 연결을 유지하려던 독일의 시도들은 좋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접견은 교정시설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됐으며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화상통화도 가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돼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지될 필요 있다고 평가됐음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 III. 맷으며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에 독일법계 국가 교정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았다. 각국의 상황은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검토했다.

교정과 관련해 코로나19의 부수적이나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행정업무 등에 대한 재택근무의 증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질병 발생이 감소했다는 교정기관의 보고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나아가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소자의 재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코로나19를 겪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권수진·장진환·김용명·박선영·최준혁·조윤오·오병두·정지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II)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 김종구, “코로나(Covid-19) 시대의 행정정책의 변화”,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2021), pp.127~144.
- 최준혁, “벌금형의 합리적 산정가능성 - 형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pp.7~40.

- 최준혁,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교정학회, 2018, pp.159~178.
- 최준혁, “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pp.7~36.

#### [국외 문헌]

- 라우벤탈(신양균·김태명·조기영 역), *독일형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Dünkel/Harrendorf/Dirk van Zyl Smit, *The Impact of COVID-19 on Prison Conditions and Penal Policy*, Routledge 2022.
- Feest/Lesting/Lindemann, *Strafvollzugsgesetze*, 8. Aufl., Wolters Kluwer 2022.
- Kersten/Rixen, *Der Verfassungsstaat in der Corona-Krise*, C.H.Beck 2020.
- Kröll/Platzer/Ruckenbauer/Schaupp, *Die Corona-Pandemie*, Nomos 2020.
- Pohlreich/Beck/Meier/Stefanopoulou/Ziemann (Hrsg.), *Strafrecht in der Krise*, Nomos 2022.
- Seehaus e.V. (Hrsg.), *Alternative Strafvollzugsmodelle: 10 Jahre Strafvollzug in freier Formen in Sachsen*, DBH - 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e. V. 2022.
- Ahmed, “Die Öffentlichkeit unter Quarantäne”, *Festschrift für Feltes*, 2021, pp.415~217.
- Bögelein, “Vollstreckung der Ersatzfreiheitsstrafe im COVID-19-Pandemieverlauf”, *Neue Kriminalistik* 2022, pp.205~227.
- Bruckmüller/Hammerschick, “Der österreichische Strafvollzug während der Pandemie - Massiver Einschränkungen, aber keine dauerhaften Veränderungen -”, *Neue Kriminalistik* 2022, pp.320~331.
- Dünkel/Morgenstern, “Der Einfluss von Covid-19 auf den Strafvollzug und die Strafvollzugspraktik in Deutschland”, *Neue Kriminalpolitik* 2020, pp.432~457.
- Gietl, “Infektionsschutz gegen SARS-CoV-2 im Justizvollzug - eine Verordnungslücke”, *COVID-19 und Recht (COVuR)* 2020, p.853.
- Hefendehl, “Gefängnisse in Not: Was für eine Chance?” *Neue Kriminalpolitik* 2020, pp.415~431.
- Schaeff, “Auswirkung der COVID-19-Pandemie auf den Justizvollzug”, *MschrrKrim* 2021, pp.27~45.
- Wegel/Baier, “Die Erfahrungen mit COVID-19 im schweizerischen Strafvollzug”, *Neue Kriminalistik* 2022, pp.332~341.
- Wegel/Wardak/Meyer, “Covid-19 Präventionsmassnahmen aus der Sicht von Inhaftierten”, *Forum Strafvollzug* 2022, pp.33~36.

# 긍정적 도전으로 추수한 풍요로운 인생 2막

전 영월교도소장 김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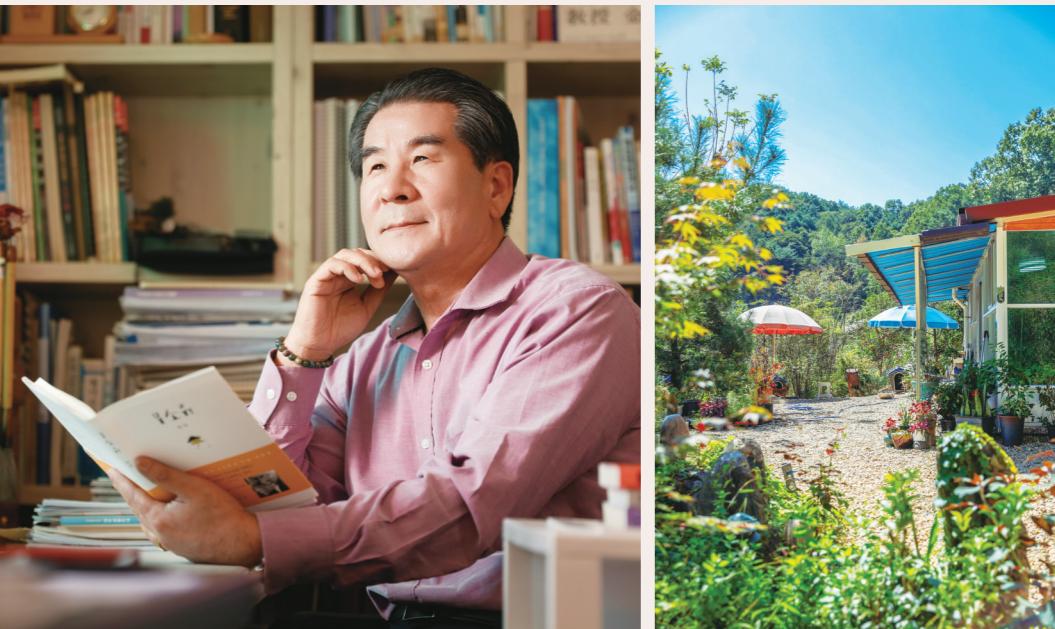
교정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기고 매사 최선을 다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더불어 담장 안 인연만큼이나 담장 밖의 인간관계와 활동에도 공을 쏟았다. 김영대 전 영월교도소장이 퇴임 후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추수할 수 있었던 이유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 현역 생활 36년에 '+a'를 더하다

경북 예천군의 동쪽 전망이 병풍처럼 보기 좋게 펼쳐진 보문면 승본리의 한 산자락에는 영월교도소장 임무 수행을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퇴임한 김영대 전 소장의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 부모님이 터를 잡고 사시던 땅 위에서 집 안팎과 텃밭을 살뜰히 가꾸며 하루하루를 바삐 살아가고 있다는 그는 “텃밭 수확철이 찾아왔다”며 월간 <교정> 취재진에게 직접 기쁜 얘기사를 건넸다. 집에서는 퇴직자의 여유로움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에서 그는 여전히 쌩쌩한 현역이다. 퇴임 1년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 회사의 감사로 활약했으며, 그 경력을 살려 올 8월부로 대구의 유망한 알루미늄 전문 제조업

체의 상임감사에 부임했다.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각 분야에 걸쳐 더 나은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교정공무원으로서 36년 동안 각 교정기관의 총무과장 및 보안과장, 대구지방교정청 감사 업무, 법무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보직과 임무를 수행하며 쌓아 온 경험이 지금의 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옮 초부터 실무 경험과 학업을 통해 쌓은 법률 지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으로 얻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법원 판결 전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함으로써 법적 다툼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



통합에도 일정 부분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 긍정적 도전으로 설계한 탄탄한 미래

김영대 전 소장은 1984년 입직한 그 순간부터 교정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마음은 36년간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해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이를 자기 계발로 해소했다.

“대구교도소 수용팀장으로 일하던 2001년 당시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요. 업무 외 시간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에 매진했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12년 성동구치소에서 출정과장으로 일할 때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고, 뒤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업무와 학업을 치열하게 병행

한 끝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죠. 아울러 담장 밖 인간관계와 대외 활동에도 힘쓰며 인적 네트워크에 내실을 더했는데요. 이처럼 당장 힘든 상황에 굴하지 않고 미래를 긍정하며 다방면으로 도전에 임한 덕분에 교정공무원 퇴직 후에도 현역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인생 설계에 있어 치열한 자기 계발, 폭넓은 대외 활동과 함께 김영대 전 소장이 강조한 또 하나의 덕목은 ‘마음의 여유’다.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쫓기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시간이 오래 이어질수록 정작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운동 취미 찾기, 연금 알뜰하게 관리하기, 나눔과 봉사활동 등을 권한 김영대 전 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교정 교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KCS\\_TV](http://www.youtube.com/@KCS_TV))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October + Vol. 569

## 법무부·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일시·장소 9. 7.(목) 10:30, 본부 회의실

주요 내용 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류사범 치료프로그램 협력 확대

## 추석맞이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전달식



일시·장소 9. 15.(금) 11:30, 본부 회의실

주요 내용 교정본부장 주재 오찬 및 환담, 교회방송센터 견학 등

## 수용자 전자서신 개편(안) 시찰



추진 배경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는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전자서신 폐지 및 e-그린우편 링크 연결

##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9. 27.(수) 14:00, 수원구자소

주요 내용 수용관리 등 기관 운영의 노고 격려

##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전광호

### 제52회 교정작품 전시회 출품작 심사

서울지방교정청은 9월 22일 서울남부구치소 체육관에서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주시영 대표 등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교정작품 전시회 출품작을 심사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 청렴 산책로 조성

서울구치소는 9월 4일 청렴한 조직문화 분위기 정립을 위해 구치소 내에 '청렴 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책로에는 역사적으로 청렴한 위인 5인을 선정해 그 의미와 교훈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 제1회 호계3동 마을축제 참여

안양교도소는 9월 2일 제1회 호계3동 마을축제에 참여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보라미 탈인형, 제복 등을 이용한 포토존 운영, 기념품 증정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교정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 제72회 소원갤러리 전시회 개최

수원구치소는 9월 19일 구치소 내 소원갤러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현대미술의 美'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홍연 소장은 "소원갤러리는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입·출소 시 거치는 공간으로 이번 전시회 작품을 통해 수용자들의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9월 19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김도형 소장은 "교정공무원의 마음 건강과 생명 존중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 교정시설 참관 실시

인천구치소는 9월 19일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1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인들은 수용자 처우와 교정행정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 '청렴 골든벨' 행사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9월 13일 직원 간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청렴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 준법 교육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9월 13일 푸른자리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도소 및 교도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공감 능력 향상, 디지털 범죄예방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조영

### 음주운전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9월 12일 음주운전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음주운전 예방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준법의식 함양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양종문

###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여주교도소는 9월 2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류동수 소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상생과 생명 나눔 실천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 교정시설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9월 26일 아부다비 사법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대표단은 보안청사, 수용동, 웨툰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교정시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춘천교도소는 9월 22일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마음을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 제13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 개최

원주교도소는 9월 23일 원주 행구수변공원에서 제13회 대한민국 교도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전국 교도관 음악동호회 12개 팀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졌으며, 원주시민 및 교정가족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강릉교도소 | 교감 전홍재

### 부패방지 청렴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

강릉교도소는 9월 18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사)부패방지

국민운동총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부패방지 청렴인증교육 상호 지원 및 청렴인 육성 등을 위해 진행됐다.

영월교도소 | 교위 김한진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영월교도소 까막딱따구리 봉사회는 9월 19일 추석을 맞아 다문화 가정 3곳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봉사회는 모든 가정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실시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 교정시설 참관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9월 7일 원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23명의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교정위원들은 기관 내 시설 등을 참관한 후 교정협의회의 운영 자문 및 격려금을 전달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 수용자 물품 기증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9월 25일 평택·안성 교정협의회로부터 빵과 음료수 300개를 기증받았다. 이성호 지소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용자들을 위해 빵과 음료수를 기증해 준 평택·안성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망교도소 | 8직급 황재민

### 교정시설 참관 실시

소망교도소는 9월 8일 케냐 교육부장관 및 도미니카 복음대학교 이사장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대한민국 민영교도소 및 교정행정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됐다.



##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이시온

### 청렴간담회 및 청백리 사적지 탐방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9월 22일 부패취약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청백리 사적지인 '이양서원'을 탐방하며,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청렴의 가치를 몸소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대구교도소는 9월 21일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남주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 정부정책 소통과정 직원 교육 실시

부산구치소는 9월 5일 직원들의 적극행정 인식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유형 및 사례, 게임을 통한 적극행정 생각하기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 불교 집회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9월 13일 불교 집회를 실시했다. 불교 집회를 진행한 대구 지상사 지우 스님은 "수용자들이 집회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남은 수용 생활을 아무 탈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김시진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창원교도소는 9월 13일 추석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9곳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윤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을 맞아 지역 결연마을, 사회복지시설, 복지재단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했다. 최진규 소장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 반부패·청렴 정책 실행위원회 개최

포항교도소는 9월 13일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 논의 등이 진행됐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영근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9월 19일 추석을 맞아 자매결연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조영근 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돋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구구치소 | 교위 장지윤

### 월례회 실시 및 커피 쿠폰 증정

대구구치소는 9월 4일 월례회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월례

회에서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직원들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박성국

### 교정시설 참관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9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등 3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현주 소장은 "이번 방문이 교정행정 이해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확립 등 재범방지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조남영

### 도주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안동교도소는 9월 12일 안동 강남파출소와 함께 도주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수용자 신체검사 및 차량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기회가 됐으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 도주사고 대비 훈련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9월 14일 수용자 도주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강성현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수용자 도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골든벨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9월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골든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최도원

###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9월 1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아이스크림 1,000개를 기증받았다. 조관성 소장은 "아이스크림을 기증해 주신 교정협의회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 청년인턴 채용

울산구치소는 9월 11일 청년인턴 2명을 채용했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들의 업무 경험 증진과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성우

### 청렴 행사 실시

경주교도소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가치 제고를 위한 청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기관 SNS를 통해 청렴 퀴즈 풀기, 청렴 댓글 등 이벤트를 실시해 공감형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통영구치소는 9월 14일 추석을 맞이해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통영구치소 직원 봉사단체인 '통영사랑나눔회'에서 주관했으며, 직원들이 심시일반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 9가정에 전달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밀양구치소 미르피아 보라미봉사단은 9월 19일부터 20일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KCS\_TV)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October + Vol. 569

까지 추석을 맞이해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실시했다. 최재우 소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눔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9월 14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노인회관 4곳, 소외가정 2곳, 학교 2곳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 새내기 직원 간담회 실시

거창구치소는 9월 22일 신규 직원 8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직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직원 간담회는 선배 교정공무원의 경험담 및 조언 등을 통해 직업의식을 고취했으며, 신규 직원들의 포부 및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건하

##### 봉사활동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9월 26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대전시 유성구에 자리한 ‘사랑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건물 내·외곽 청소, 생활관 주변 제초 작업, 위문금 전달 등 구슬땀을 흘렸다.



####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대전교도소는 9월 18일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에 동참한 직원들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반부패 및 청렴 의지를 홍보하기 위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물을 배부했다.

####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청주교도소는 9월 14일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우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돋고자 분평동·산남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천재활원 등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실시했다.

#### 천안교도소 | 교도 이철희

#####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간담회 실시

천안교도소는 9월 13일 교정본부, 대전지방교정청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선·보완을 목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차소민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9월 19일 추석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참 좋은 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금을 전달해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 정부 정책 소통 교육 실시

공주교도소는 9월 6일 적극행정 전담 박지현 강사를 초빙해 정부 정책 소통 교육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



와 법무부의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9월 14일 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외부 전문 강사로 초빙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홍성교도소는 9월 25일 추석을 맞아 각 위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행복하고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9월 25일 추석을 맞아 지역 소재 공동생활가정 3곳을 방문했다. 이날 직원들은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모은 성금을 전달했으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9월 7일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청사 주변과 진입로, 민원인 주차장 등의 환경을 정화하고,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 관련 신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웅배

##### 칭찬해YOU 캠페인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칭찬해YOU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이 동료 1명씩을 선정해 칭찬하는 이벤트로 단합력을 제고하고자 실시됐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정영선

#####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9월 22일 추석을 맞아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장애인 복지시설 ‘밀알의 집’과 아동보육원 ‘애육원’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 광주교도소 | 교위 박선주

##### 문화 체험 교육 실시

광주교도소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 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의 협조로 실시됐으며, 아시아 공예(나전칠기) 및 튜르키예 공예 예술 체험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전주교도소는 9월 20일 추석을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 '소화 진달네집'과 훌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순천교도소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트레스 진단 및 상담, 피지컬 케어, 마음힐링 부스, 커피트럭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목포교도소는 9월 20일 추석을 맞아 아동양육시설 '소전원'을 방문해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목포교도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교정시설 참관 실시**

군산교도소는 9월 8일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3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교정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통해 국민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실시됐으며, 참관 위원들은 직업훈련 현장 및 가족 만남의 집 등을 둘러봤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 실시**

제주교도소는 9월 19일 제주동부경찰서, 해병대 제9여단, 제주소방서, 환경청 등 70여 명과 함께 대테러 훈련을 실시

했다. 배경석 소장은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미용 봉사 활동 실시**

장흥교도소는 9월 8일 장흥군 미용협회의 후원을 받아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조병주 소장은 "여성 수용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장흥군 미용협회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수용자 물품 기증**

해남교도소는 9월 20일 천주교 광주교정사목회로부터 오예스 과자 470박스를 기증받았다. 지경선 소장은 "추석 명절에 소외감을 느낄 수용자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읍교도소 | 교도 윤홍익

**사랑의 손잡기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9월 21일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2곳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사랑의 손잡기'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수원구치소 교위 강희석**

강희석 교위는 2004년 임용 후 약 19년 동안 재직하면서 동료들에게 성실한 직원이라 평가받고 있다. 평소 교정행정 발전과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웃은일을 도맡아 하는 등 선후배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구치소 교위 이창주**

이창주 교위는 지난 8월 25일 대구지방법원 법정 내 대기실에서 법정 구속된 수용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적은 종이와 그 종이에 싸인 과도를 발견하고 즉시 압수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천안교도소 교위 정선희**

정선희 교위는 규율, 징벌, 복지 처우 등 다양한 신입 교육을 실시해 신입 수용자가 단시간 내 수용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돋고, 고령 및 불우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수시 상담을 통해 여성 수용동의 수용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교도소 교위 배철인**

배철인 교위는 보안과 심리치료팀 소속으로, 조사·징벌자 및 상습폭행 가해자, 자살 우려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과 변화를 유도하고, 문제행동을 교정해 교정사고 예방과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 독자퀴즈



당첨 인원 UP!  
선물은 2배!

Q1 교정의 날은 몇 월 며칠인가요? \_\_\_\_\_



Q2 올해 교정의 날은 몇 주년인가요? \_\_\_\_\_

## 숨은 그림 찾기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부엉이



깃털



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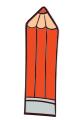
비커



전구



집



연필



팔레트



##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mailto: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 원권 발송



#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01.19-02.01



@GANGWON2024





## 제78주년 교정의 날

2023. 10. 28.(토)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우리나라가 자주적 교정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2002년에 법정기념일(10. 28.)로 제정됐습니다.

매년 교정의 날에는 교정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확산시키고**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를 격려하고자**  
‘교정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